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정영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연구총서 ; 04-09)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51-9 93340

349.9-KDC4  
327.1747-DDC21

CIP2004002152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 론 .....	1
II. 북한 핵프로그램 현황분석 .....	7
1. 플루토늄(PU) 프로그램 .....	7
가. 플루토늄 보유량 .....	7
나. 플루토늄 추출능력 .....	11
2.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	15
가.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	15
나. HEU 생산능력 추정 .....	17
III. 핵폐기 국제적 사례분석 .....	19
1. 핵폐기 성공사례 (I): 우크라이나 .....	19
가. 우크라이나의 핵프로그램 현황 .....	19
나. 우크라이나 핵폐기 과정 .....	20
2. 핵폐기 성공사례 (II): 남아프리카 공화국 .....	29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현황 분석 ..	29
나. 남아프리카 핵 폐기 과정 .....	35
3. 핵폐기 실패사례: 파키스탄 .....	37
가. 파키스탄의 핵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현황 분석 .....	37
나. 대 파키스탄 핵개발 억제 실패 원인과 결과 .....	45
4.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56

IV. 북한의 핵 폐기 전망과 북·미관계 .....	59
1. 북한의 핵 폐기 전망 .....	59
가.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 .....	59
나. 새로운 북·미 핵합의 방향 .....	68
2. 북한의 핵 폐기 결정 이후 북·미관계 .....	74
가. 북한의 대미접근 방향 .....	74
나. 미국의 대북접근 방향 .....	80
다. 북·미 관계 전망 .....	86
V. 결 론 .....	95
참고 문헌 .....	99

## 서론

# I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협정체결로 북한은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북·미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였던 주한미군 전술핵의 철수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 중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경수로 2기와 중유지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도 얻게 되었다.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한다는 조건 합의 수준의 것이었다. 이미 개발해 놓았을 수도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거핵) 의혹에 대해서는 북·미간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sup> 만약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과거핵’ 조차도 문제 삼았더라면 핵협상 타결은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핵능력에서 단순히 무기수준의 위력에 더하여 정치 외교적 위력을 추구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유사시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치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힘을 지니

---

<sup>1</sup>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94년도 제네바 핵합의 북측 수석대표였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빌어 “로버트 갈루치 미국 수석 대표가 (핵무기를) 더만 만들지 말라는 식의 암시로 핵무기 보유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갈루치는 “당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과거핵 보유 묵인 주장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22일.

고 있는 것이다. 평화 시에 북한의 핵카드를 대미 외교 안보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다. 전시에는 핵무기로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그들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공갈’로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주일미군을, 2차적으로는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일본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한 적도 있다. 다소 과장적인 측면은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수준의 미사일 개발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사일 운반수단이 핵무기와 결합될 때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대미 ‘공갈’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바로 이 수단으로 북·미 안보대화 채널 구축 → 북·미잠정협정체결 → 북·미평화협정체결 → 미군철수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일 자신도 그의 궁극적인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 그가 북한 군사력의 위력을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근거에는 강대국에 대적할 수 있는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김정일 권력을 담보하는 것이 곧 핵능력이라 할 수 있을 진데 북한이 핵 수단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대미 핵위협은 단순히 조잡한 수준의 핵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은 최소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거나 한반도 유사시 자동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주일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인질화’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장거리 대포동급



미사일 시험발사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대미 군사적 위협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그들이 지칭한 ‘불량국가’들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능력을 우려해 왔다. 9·11 테러를 경험한 이후 미국의 이러한 위협인식은 구체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해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선제 핵공격을 함부로 감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에 의한 선제 핵공격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 북한과 같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독특한 유일지배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핵공격을 가하는 무모함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우려가 9·11 테러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기술이 다른 국가 또는 테러단체에 이전되었을 때 전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해 온 것으로 보아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단순히 동북아 전략차원에서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세계전략 차원의 미국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북한의 ‘선 핵포기, 후 핵협상’원칙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북핵문제 관련,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 방북 이후 북·미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KEDO 집행이사회는 동년 12월부터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핵시설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 등 제네바 합의

에 따른 핵동결 해제 조치들을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NPT 탈퇴를 재 선언함으로써 북·미관계는 1993-1994년에 조성되었던 긴장국면 이상으로 빠져들어갔다. IAEA 특별 이사회는 또 다시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보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식대화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6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최되었으나 서로의 심각한 입장차이만 확인되었을 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2004. 7. 27)을 통해 미국이 주장하는 ‘선 핵포기’, ‘평화적 핵활동 중지’ 등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 공화국 입장은 먼저 ‘동결 대 보상’ 조치를 통해 조·미 사이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그들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공개선언을 하여 미국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부터 “핵 억지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 “8000여개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핵무장 의도를 우회적으로 밝혀 오다가 마침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최수현 외무 부상이 “우리는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 했으며, 이를 무기화했음을 이미 선언했다”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즉각 이는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을 강화해 줄 뿐”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 핵 관련 협정을 체결, 그 대가로 경제원조를 받았으나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지원을 받아가며 핵무기를 개

발해 왔다면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어떠한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뒤집을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줄기차게 북한의 고약한 언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한 바 있다”<sup>2</sup>는 점을 밝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핵문제 관련 북·미 양측에는 어떠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상호 줄다리기가 마냥 지속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을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의 대미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미 ‘공갈외교’에만 집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한이나 일본을 핵·미사일 공격위협으로 그들의 대미 ‘협상인질’로 삼고자 하는 유혹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미국을 더욱 자극하게 되어 최악의 한반도 정세를 초래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위로 남한의 군사력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이 초래되어 이는 북한 당국에 대한 또 다른 체제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정부도 기존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대북협력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대남 군사적 위협이 심화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태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비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는 열악한 경제력을 가진 북한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

---

<sup>2</sup> 『조선일보』, 2004년 4월 23일.

으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 또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때 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국제적 대북 제재위협 가능성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따라서 북핵문제 관련 평화적 해결 시간이 지연될수록 북한 당국의 체제위협 인식은 보다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말미암아 북한 당국이 그들의 핵카드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을 판단하고 핵 폐기 이후 북·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진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핵 폐기 관련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폐기 관련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을 시도하고 핵 폐기 이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다.

# 북한 핵프로그램 현황분석

## II

### 1. 플루토늄(PU) 프로그램

#### 가. 플루토늄 보유량

북한은 1994년 북·미제네바 합의 이전에 이미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전 북한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었던 4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었다. 재처리 기술 및 시설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원자료가 필수적이다. 제 1, 2, 3 원자료가 모두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제4원자로에 해당하는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서 함남 신포에 소재하고 있다.

제1원자로(KP-0001 연구용 원자로)는 구소련에서 도입되어 1965년 6월 30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 원자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연료(20~80%)의 농축 우라늄은 구소련에서 수입되었으며 사용된 핵연료는 구소련으로 전량 회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 출력 4MW, 최대출력이 8MW인 이 원자로는 순수한 연구용 원자로이며 「조·소 쌍무협정」에 근거 1992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친 IAEA사찰을 수감한 바 있다. 북한은 제1원자로를 원자력 연구에 주

로 이용하였을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핵물리학, 원자로 물리학, 원자로 기술, 핵전자 공학, 핵 재료학, 방사선 의학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이같이 북한은 이 원자로에 대해서 기술지원, 핵연료 공급, 관련시설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IAEA안전조치협정에 준하여 사찰을 받으면서 연구용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가장 밀접한 것은 제2원자로이며 이제까지의 북한 핵개발용 플루토늄 생산의혹을 가진 것은 제2원자로라고 할 수 있다.

천연금속 우라늄을 핵연료로 하고 흑연 감속재를 사용한 가스냉각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2원자로는 북한 자체의 기술로 1980년대 초에 건설되어 1986년 가을에 가동되었다.<sup>4</sup> 이 원자로는 당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원자로로서 기술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건설하기 쉬운 모형이다.<sup>5</sup> 북한이 제2원자로의 냉각재를 탄산가스(Co<sub>2</sub>)라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할 때 동원자로는 영국의 칼더 홀(Calder Hall)형과 그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sup>6</sup>

정근모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가스로는 천연우라늄 핵연료에서 상대적으로 Pu-239 동위원소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후진국 핵개발에 적합한 모형”<sup>7</sup>이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가스로를 통해서 첫째, 북한내에 매장된 우라늄 원광을 채광하여 핵연료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중국 또는 소련으로부터 핵연료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둘째, 원광을 사용할 경우 핵사찰 시

<sup>3</sup>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북한연구』, 제3권 22호 (1992 여름), p. 29.

<sup>4</sup> 『조선일보』, 1992년 4월 17일.

<sup>5</sup> 정근모 교수의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하의 핵관련 배포자료 참조.

<sup>6</sup>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p. 30.

<sup>7</sup> 정근모, 『북한의 핵문제 현황과 전망』 참조.

사찰관에 의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핵연료를 은폐시킬 수 있으며 셋째,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sup>8</sup>에 편리한 것 등의 이점 누릴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제2원자로는 IAEA에 보고(1987)는 되어 있으나 사찰을 받은 적은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전기출력이 5MWt라고 밝혀져 있다. 전기출력이 5MWt인 것을 열출력으로 환산하면 16.5MWt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제2원자로는 최대 출력을 30MWt까지 낼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출력을 줄여서 발표했던 것은 사용후 핵연료 양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짐작된다. 30MWt 열출력으로 가정할 경우 11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나 초기의 운전수준을 감안하면 약 6kg 정도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최근 발표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추정치가 나왔다. IISS는 핵연료의 절반 혹은 전체 핵연료가 교체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재처리 공정의 작업손실률을 10~30%로 가정했을 때, 5~6kg 내지 6.5~8.5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1</sup> 또한 ISIS의 David Albright는 북한이 5MWe 원자로로부터 최대 6.3~8.5kg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을 사용후 핵연료를, IRT-2000 연구용 원자로로부터 최대 2~4kg

---

<sup>8</sup> 핵연료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라늄 235는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반면 우라늄 238은 우라늄 235가 분열할 때 나오는 중성자를 흡수 핵무기 원료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 239로 변환된다. 이 플루토늄 239 중 분열성 플루토늄이 95% 이상이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흑연감속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239는 분열성 플루토늄 비율이 95% 이상으로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다. 『경향신문』, 1993년 7월 21일.

<sup>9</sup>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p. 30.

<sup>10</sup> 위의 글.

<sup>11</sup>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London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4) 참조.

Pu 포함되어 있을 사용후 핵연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합산하면 최대 6.9~10.7kg Pu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2년 12월 말 북한이 동결을 푼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Pu량 관련, ISIS의 David Albright는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Pu량은 최대 약 25~30kg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반면 IISS는 8,000여 개의 사용후 핵연료가 25~30kg의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작업손실률 10~30%를 전제로, 17.5~27kg의 추정 플루토늄 추출량을 내놓았다. 특히 북한은 2003년 10월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완료하고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2년 12월말 북한이 동결을 푼 5MWe 원자로에서 생산되어지는 Pu량 추정관련, 생산되는 플루토늄 양은 5MWe 원자로의 열출력과 가동기간에 좌우된다. 연간 가동률 70~80%를 가정할 경우, 연간 약 5~7kg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IISS는 이 원자로의 1년 가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 사용후 핵연료는 연간 6~7kg의 플루토늄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재처리 공정의 작업손실률을 10~30%로 가정하면, 4~6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1월 영변을 방문한 Sig Hecker 박사는 5MWe 원자로의 가동을 확인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50MWe 및 200MWe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생산되어지는 Pu량 추정 관련, 50MWe 및 200MWe 운자로는 완공되면 각각 연간 50kg 및 200kg 이상의 Pu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 건설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2004년 1월 영변을 방문한 Sig Hecker 박사는 50MWe 원자로의 건설 중지상태를 확인하였으며, Digital Globe는 200MWe 원자로 또한 2003년 12월까지 건설 중지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 나. 플루토늄 추출능력

핵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처리하는 연료 사이클의 단계중 가장 우려되는 단계다.<sup>12</sup> 재처리 단계에서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정상 작업 중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플루토늄이 재처리 공장에서 일단 분리되면 이후의 연료 사이클 단계에서 도난, 오용, 유용 등에 취약해진다. 북한의 재처리 시설이 현재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13</sup>

북한은 IAEA에 제출한 14개 핵시설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사찰단의 방문을 뒤늦게 허용한 영변 방사능 화학연구소에서 건설 중이었던 방사능 화학실험실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시설을 통해서 재처리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건설 중이었던 이 시설을 부분 가동하여 플루토늄(Pu) 추출 공정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sup>14</sup> 그런데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주장한 이것은 대형시설로서 길이 180m, 폭 20m, 5층 정도의 높이에 축구장 2개 규모의 넓이를 갖춘 플루토늄 생산 시설임에 분명하다.

한국의 핵관련 전문가들의 의견<sup>15</sup>에 따르면 시설의 규모를 외국의 재처리 공장과 비교해 볼 때, 영변의 재처리 시설은 연간 약 200~

---

<sup>12</sup> 핵연료 물질이 자원생산(채광, 정련, 전환)에서부터 연료회수, 폐기물관리,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인 전과정을 일컬어 전체적인 핵연료 사이클이라 일컫는다. 이 중에서 최초의 다섯가지 단계 즉 채광, 정련, 전환, 농축, 핵연료성형가공을 통틀어 연료사이클의 전처리(front-end)단계라 한다. 그리고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단계를 조사(irradiation)라고 하며 나머지 제단계 즉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재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핵연료 사이클의 후처리(back-end)라고 한다.

<sup>13</sup>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핵확산과 핵확산 금지정책』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3), p. 86.

<sup>14</sup> “북한핵시설의 3대 수수께끼,” 『월간조선』 (1992.8) 참조.

<sup>15</sup> 한국의 핵관련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인터뷰에 의한 판단임.

3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완공시 세계에서 2 번째로 큰 규모의 시설로 추정되었다.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총장 역시 방사능화학실험실이 완공되면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이러한 공장건설을 고속증식로<sup>17</sup>의 개발 때문이라고 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고속증식로가 실용화 되려면 선진국에서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핵발전 산업이 아직까지 원시단계 상태에 있는 북한이 고속증식로 개발 때문에 플루토늄 생산공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sup>18</sup>

제1공정라인만 고려한다면 영변 재처리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최대 처리용량은 일일 약 0.38t이다. 5MWe 원자로의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봉은 약 50t이므로 영변 재처리시설이 전 처리용량으로 가동할 수 있다면 132일이면 재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1994년 당시 거의 완공직전에 있던 제2공정라인이 완공되면 영변 재처리시설의 최대 처리용량은 일일 약 0.7t이다. 북한은 동결을 푼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2003년 10월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

<sup>16</sup> 『동아일보』, 1992년 5월 16일.

<sup>17</sup> 고속증식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는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고속증식로에서는 연소 후에 최초 장전할 양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성된다. 우라늄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고속증식로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차세대 전력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고속증식로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속증식로 역시 핵탄료인 플루토늄의 대량비축 및 생산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벗을 수 없다.

<sup>18</sup> 정근모, 『북한의 핵무기 현황과 전망』 참조.

재처리 완료가 영변 재처리시설에서의 가동조집이 파악된 4월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으므로 시기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재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활동은 유지되었다지만 지난 10년간 가동 중지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한 번도 최대처리용량 가동을 한 적이 없는 재처리시설이 재가동하자마자 최대처리 용량의 70% 이상의 처리용량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만약 영변 재처리 시설이 아닌 다른 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의 비밀 지하시설에서 재처리를 했다면 8000여 개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완료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이 이러한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경우 핵무기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핵확산방지대안체계평가계획(NASAP)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수송된 이미 분리된 플루토늄을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특수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훈련되고 경험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수 십 개의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은 수백만 달러의 경비만 들이면 몇 개월 내에 완성할 수 있으며 탐지되지 않게 해낼 수 있다. 단지 한 개 또는 두 개의 핵무기만이 필요하다면, 또는 산화물이 직접 사용된다면 더 적은 시간과 경비를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다. 플루토늄이 처음 획득되는 시간부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물질을 생산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수일 또는 수주이면 가능하다”고 한다.<sup>19</sup>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지가 분명하고 강렬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

<sup>19</sup>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핵확산과 핵확산 금지정책』, pp. 97-98.

우 앞에서 설명한 재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하화한 재처리시설을 통해서도 핵무기 개발용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었을 가능성조차도 배제할 수 없다.<sup>20</sup> 특히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사화확실험실에서 플루토늄 추출공정시험에 성공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재처리 기술축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 1년 이내에 1000만 달러 정도의 비중이면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핵무기제조목적을 위한 소규모재처리시설 건설<sup>21</sup>을 북한이 쉽게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서 은밀히 추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과 관련, 핵무기 보유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북한이 최소한 2~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며,<sup>22</sup> 일본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북한이 이른바, ‘나가사키형 원폭’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미 워싱턴의 핵감시기구인 ISIS의 연구 보고서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프로그램을 추진해 오면서 핵무기를 2개 내지 9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sup>24</sup> 이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인용 보도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5</sup>

미국의 지난 대선 후보자였던 미 상원의원 케리 역시 “오늘날 북한의 손에는 4~7개의 핵무기가 들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26</sup> 심지어

<sup>20</sup>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p. 36.

<sup>21</sup>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핵확산과 핵확산 금지정책』, p. 87.

<sup>22</sup> 『조선일보』, 2004년 11월 8일.

<sup>23</sup> 『조선일보』, 2004년 10월 17일.

<sup>24</sup> 『조선일보』, 2004년 10월 12일.

<sup>25</sup> 『조선일보』, 2004년 10월 5일.

<sup>26</sup> 『조선일보』, 2004년 10월 1일.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의 김명철 소장은 호주 ‘채널 나인’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대 300개일 수도 있다. 이들 핵탄두는 모두 미국 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다”<sup>27</sup>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관련 이러한 주장은 분명한 정보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 가.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북한의 HEU 프로그램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제 2차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2년 10월 부시 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켈리 차관보가 같은 달 16일 “북한이 HEU를 이용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으며, 이는 북·미간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그런데 켈리 특사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켈리 특사의 추궁에 “(북한의)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미국정부측 상황에 정통한 미국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가 2003년 1월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켈리특사는 북한측 대표에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

---

<sup>27</sup> 『조선일보』, 2003년 5월 4일.

여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혜택과 원조를 받으려면 우라늄 농축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며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원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004 3월 26일 개최된 2차 6자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HEU 프로그램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HEU 생산능력 추정

북한의 HEU 생산능력 관련, 해외 전문기관들의 평가판단<sup>2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CIA** : 북한에는 연간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HEU 생산 가능한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 공장은 빠르면 2005~2006년경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 2003년 4월 프랑스와 독일 당국이 북한으로 향하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22톤의 선적을 차단했는데(총 220톤 가운데 1차 선적 분량), 이 알루미늄 튜브는 파키스탄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G-2형 원심분리기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것이

---

<sup>28</sup> 전성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실태, 통일정세분석 2004-12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7-10 참조.

다. 200톤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로는 3,500개의 G-2형 원심분리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75kg의 HEU, 즉 제 1세대 HEU 핵무기 3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북한이 해외로부터 상당량의 장비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장규모의 HEU 생산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은 2010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당 회전속력 60,000회 전후의 원심 분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현재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당 회전속력 60,000회 전후의 원심분리기 1기는 연간 최대 30g HEU 생산이 가능하다. 연간 2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HEU 양은 약 50kg 이상이므로 약 1,700기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고강도 알루미늄을 대량 확보하고 원심 분리기 설계도를 파키스탄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분리기를 자체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원심분리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고도의 산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수출통제품목이다. 최근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미사일 거래 관련 뉴스를 참조할 때 북한의 R & D 차원에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HEU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무리한 가정이지만, 분당 회전속력 20,000회 이하의 저성능 원심분리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회전속력 20,000회 이하의 원심분리기의 HEU 생산효율은 분당 회전속력 60,000회 원심분리기 1/9 이하이므로 같은 량의 HEU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9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HEU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증거로 북한이 수입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은 원심 분리기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항공기 부품으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라크는 이를 포탄의 탄피로도 사용하였다.



# 핵폐기 국제적 사례분석

## III

### 1. 핵폐기 성공사례 (I): 우크라이나

#### 가. 우크라이나의 핵프로그램 현황

현재 우크라이나는 비핵국가이며 더 이상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1991년 독립당시 우크라이나는 1900기의 전략핵무기와 2650~4200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었다. 이를 직접 조정통제할 권한을 갖게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러시아, 미국 다음의 세 번째 가는 핵국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각각 10개의 탄두를 장착한 46기의 SS-24 ICBM, 6개의 탄두를 장착한 130기의 SS-19 ICBM, 25대의 Bear-H16 전폭기, 19대의 블랙잭 전폭기, 그리고 600기의 지대공 크루즈 및 공대지 미사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구 소연방이 붕괴되었을 때, 2650~4200개의 구소련 전술핵무기가 배치 또는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미사일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하였으며, 러시아 군간부와 부대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탄두를 터뜨리는 데 필요한 장전 및 타깃 코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후 바로 키예브

(Kiev)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주장하였다. 1992년 3월 우크라이나는 몇몇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했으며 당분간 러시아에 전략핵무기의 인도를 중단하였다.

1992년 6월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핵무기에 대한 몇몇 통제권을 수립하기 위한 첫 조치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폭기, 지상 크루즈 미사일, 사일로 ICBM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무기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 군대로 교체하였다.

1992년 후반에서 1993년 전반기에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폴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재정적 보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탄두 컴포넌트(components)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폭격기라든가 미사일 등과 같은 전략적 운반수단들의 소유권도 주장하였다.

## 나. 우크라이나 핵폐기 과정

1991년 7월 구소련 당시 미·소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I)을 체결하였다. 당시 미·소간 보유한 ICBM 등 전략핵무기를 발효후 7년에 걸쳐 각각 30%와 38% 감축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5월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START-I 조약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Lisbon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3년 9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Massandra 정상회담)시 전략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하였다. 당시 핵무기 이전시기, 보상내역 등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로 남겨뒀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991년 7월 독립당시부터 독립선언문에 비핵 3원칙(불반입, 생산, 획득)을 명시하고 러시아와 핵무기 이관협

상을 진행해 왔다.

1993년 11월 우크라이나 국회(최고회의)는 START-I 조약과 Lisbon 의정서 비준 시 유보조치를 통해 핵보유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비핵국가로서 NPT 조약에 가입하기로 한 Lisbon 의정서 제5조에 대해서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즉 그 결정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된 구소련의 전략운반수단의 36%, 전략핵탄두의 42%만 START-I 조약에 의거 해체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회는 남아있는 전략핵탄두 운반수단 제거는 해체비용, 핵탄두에서 나오는 핵물질에 대한 보상과 안전보장 등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하였다.

의회의 비핵국가 전환유보 결정으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 압력에 직면한 Kravchuk 대통령은 1993년 12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였다. 의회의 비핵국가 전환유보 결정에 대해 미국과 서방은 경제지원 중지와 NATO 'Partnership for Peace' 지위부여 거부 위협을 가하였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4년 1월 CIS 방문 대상국에서 우크라이나 핵보유 시 경제지원은 없을 것이며 국제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93년 12월 고어(Gore) 미 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동시에 미 고위 협상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제1차 3자회담을 개최하였다. 1994년 1월 초 제2차 3자회담을 워싱턴에서 개최하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4년 1월 1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은 키예프를 방문하게 되었다.

1994년 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클린턴 미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 Kravchuk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자 선언(Trilateral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이 3자 선언은 우크라이나가 비핵화와 핵비확산 약속을 충족

시키는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에너지성 산하 'US Enrichment Corporation'과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부 간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미·러간에는 러시아 HEU 500만톤을 러시아에서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희석하여 이를 미국에서 상업용 원자로 연료로 제조·판매한 후 러시아에게 대금(약 120억불 추산)을 지불키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대통령에 의한 3자성명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간 독립, 주권, 영토의 일체성에 기반을 둔 완전하고도 동등한(full and equal)관계를 천명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최단기간 내에 NPT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핵탄두 이관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략 핵탄두를 러시아에 최단기간 내에 이관키로 규정하였다. 또한 부속서에는 우크라이나가 START-I에 따라 7년 이내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간 합의한 핵무기 폐기 비용 및 고농축 우라늄(HEU)가격산정 원칙을 근거로 핵폐기 보상을 책정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탄두를 러시아에 이관하고, 러시아는 1차 이관분 200개 핵탄두 이양에 대한 보상으로 10개월 내 100톤의 원자로 연료를 공급키로 하였다. 미국은 'Nunn-Luger Program'(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하에 우크라이나 핵폐기 비용으로 최소한 1.75억불을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였다.

동 성명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이 Kravchuk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태세가 되었음을 통보했다고 명시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START-I 조약 발효 및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 시 아래 사항을

보장(추후 영국도 동일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태세가 되어있음을 밝혔다고 명시)하도록 하였다.

첫째, CSCE 최종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현재의 국경선을 존중하는 서약과 자위권 발동이나 UN 헌장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어떠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도 하지 않을 의무를 재확인 한다.

둘째, CSCE 최종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 주권에 따른 권한행사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거나 이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강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재확인한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핵공격 행위의 희생이 되거나 핵무기 공격 위협의 대상이 될 경우, NPT 조약의 비핵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한 서약을 재확인한다.

넷째, 자국의 영토 및 부속지역, 자국군대 또는 동맹국이 핵무기 보유국과 연합 또는 동맹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NPT 조약의 비핵 당사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서약을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재확인한다.

1994년 2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START-I 조약과 Lisbon 의정서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29</sup> 1994년 11월에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NPT 비준을 거쳤다.

1994년 11월 19일 Kuchma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동년 11월 16일 NPT 가입 안을 압도적 다수(의원 총 329명

---

<sup>29</sup> John W. R. Lepingwell, "Ukrainian Parliament Removes START I Conditions,"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Research Report*, February 25, 1994, p. 37.

중 301명)의 찬성으로 비준되었던 것이다.<sup>30</sup> 그러나 여기에는 5개의 단서조항<sup>31</sup>이 부가되었다. 1994년 12월 CSCE(OSCE) 정상회의의 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4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과 연계된 안전보장 각서(Memorandum)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1994년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간 안전보장 각서 내용은 1994년 1월 3일자 성명 내 안전보장 문안과 대체로 유사하나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안전보장 각서 당사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발생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sup>30</sup> 1994년 당시 핵폐기 합의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핵포기 보상이 기대하던 20~30억불 규모의 보상에 크게 미달하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1994년 1월 14일 합의 직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9%, 반대 57%로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우크라이나 의회 인사들도 핵포기가 러시아와 미국에 대한 치욕스러운 항복이며, 핵포기 시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핵폐기에 대하여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무기 무용론, 핵무기 보관상 안전문제, 시급한 에너지, 경제난, 안전보장 확보 등을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핵안전 문제에 대해 특히 민감한 상황이었으며, 1993년 9월 우크라이나 Pervomay나 핵탄두 저장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건 발생 등 핵무기 관리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다. 1993년 Lemish 의회 국방위원장은 매일 인플레 70%, 대러시아 에너지 채납(1993년도 약 9억불), 재정적자의 GNP 30% 초과 등 열악한 경제상황 하에서 핵무기 고나리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1994년 11월 Kuchma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유지비용이 200~30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핵포기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up>31</sup> 5개의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우크라이나의 구조연방 핵무기 해체를 위한 작업은 NPT 1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해체된 핵무기의 부품은 평화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 ③핵보유국의 우크라이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위협이나 경제적 압력은 우크라이나의 최고국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 ④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수탁국(미·영·러)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관한 법적 문서에 서명하는 대로 발효한다.
  - NPT에 관한 비준법안이 발효하면 우크라이나는 비준서를 수탁국가와 교환한다.

미·러·영 외에 핵보유국가인 프랑스와 중국도 양자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기 안전보장이 OSCE 상의 안전보장이거나 NPT 조약상의 Standard Assurance와는 달리 미·러·영 3개 핵보유국으로부터 직접 우크라이나를 특정한 직접적인 별도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CSCE 정상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확실한 안전보장 담보를 전해주는 기회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우크라이나 핵무기에 대한 러시아로의 이관 및 폐기와 관련,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4년 1월 모스크바에서 3국 정상간 합의에 도달하였는데, 동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핵탄두 이관, 핵폐기 보상 및 지원,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주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핵무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간에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주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의의 참가자(good will player)이자, 우크라이나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자(do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1992년 부시 행정부 당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거의 무시하고 러시아측의 입장을 지지하다가 1993년 초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전제로 양국관계 증

---

<sup>32</sup> “Text of Resolution Detailing NPT Reservations,” Kiev Radio Ukraine World Service in Ukraine, in FM-FBIS, London (November 16, 1994); “Ukraine Joins Treaty Curbing Nuclear Arms,” *Washington Post*, November 17, 1994; “Ukraine Accedes to NPT Treaty,” *United Press International* (December 5, 1994). 참조

진 및 Nunn-Lugar Program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제공 전망을 우크라이나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도 하다.

즉 미측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은 당시 국내적으로 의회의 완강한 비핵화 반대입장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크바르추크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추진이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 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과 조언에 따라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마련해 줌으로써 1994년 1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대통령간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핵탄두(총 1840여 탄두)를 러시아에 이관하여 이를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회석하여 미국측에 전달하고 이를 미국에서 상업용 원자로 연료로 제조·판매한 후 러시아에 대금을 지불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핵연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실제로 경제지원의 규모, 핵물질의 가격 등 국제사회 및 러시아로부터의 보상액에 대한 분명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정치로는 1차 이관분 200개 핵탄두 이양에 따른 보상인 100톤의 원자로 연료(6천만불 추산)를 비롯, 핵연료 공급에 의한 총 보상액은 약 10억불로 추정된다.

핵발전소에 대한 이러한 연료제공은 핵무기 개발 및 정비능력과 핵발전소와 같은 인프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는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스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발전소를 비롯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과 정비에 필요한 자체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지원해나간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의 핵 폐기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하에 지원되었다. 미국은 ICBM, ICBM 사일로, 중무장 폭격기, 지대공 크루즈 미사일의 폐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START-I 하의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START 조약 의무사항을 넘어서 미국은 구소련 ICBM으로부터 나오는 액체 및 고체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우크라이나 프로그램을 원조하고 있다. CTR 프로그램은 긴급지원 원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SS 19와 SS 20의 해체를 위한 4천8백10억불의 신속한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펀드는 111개의 SS-19 ICBM, 130개의 미사일발사 사일로, 13개의 SS-19 발사통제 사일로, 2개의 SS-19 훈련 사일로 등의 제거에 기인한 것이다.<sup>33</sup>

46기의 SS-24 미사일이 사일로에서 제거되었다. SS-24 사일로 제거는 2002년에도 지속되었다.<sup>34</sup> CTR 프로그램은 2001년 12월 4일까지 44대의 중전폭기를 제거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11대의 중전폭기는 200년 2월에 러시아에 양도되었다. 실제로 2002년까지 미국은 동 CTR 프로그램으로 핵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폭격기를 포함하는 전략핵무기 제거(Strategic Nuclear Arms Elimination) 프로젝트 약 5억불 등 총 6.7억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

<sup>33</sup> CTR Program Plan, P. IV-5 Volodymyr Chumak and Serhey Galaka, "Programma Nann-Lugara v Ukraine" (Nunn-Lugar Program in Ukraine), Kiev (October 1999).

<sup>34</sup>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staff Correspondence with Volodymyr Chumak (June 2000).

미국은 상기 핵 폐기비용 외에 1.55억불 상당의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1.55억불 지원은 핵포기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보다는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일반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스에 잔존하였던 핵무기들은 처음부터 구소연방에 의해 개발되었고, 구소연방이 붕괴한 후에도 이를 승계한 러시아 정부에게로 소유권이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독립과 동시에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천명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국가들로부터 러시아로의 핵무기 이관은 본래 러시아 정부 소유인 핵무기 회수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국제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가스·석유는 핵무기 이관 및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있어서도 이와 직접 연관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현재에도 여타 CIS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무기에 대한 이관과 폐기이므로 대체 에너지 제공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기 핵 폐기 보상 외 러시아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리 후 에너지 공급 등 제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던 시기로 핵 폐기 합의의 여타 분야에서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전략 핵무기에 따른 러시아의 보상약속은 결과적으로 모두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4년 1월 핵폐기 합의 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undation for the Nuclear Disarmament Assistance)을 설립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참여부진으로 실현되지 못했

으며 대신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Kiev Group)이 핵무기, 미사일 등 군축에 따르는 간접적인 보상으로 사일로(Silo) 폐쇄, 오염지역 정화, 의료품 지원 등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 핵폐기 성공사례 (II): 남아프리카 공화국

###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현황 분석

1991년 이후 남아공은 핵문턱 국가에서 핵비확산 레짐(regime)에 정식으로 참여한 국가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였다가 그것을 폐기한 유일한 국가가 남아공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EC(Atomic Energy Corporation)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우라늄 매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948년 프레토리아(Pretoria)에 설립되었다. 남아프리카의 광산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평화적 핵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196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핵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AEC는 펠린다바(Pelindaba)로 이전하게 되었다. NNRC(The Nuclear National Research Center: 현재 Pelindaba Nuclear Institute)가 1961년 프레토리아 서쪽 30킬로미터 떨어진 펠린다바에 설립되었다.

1965년에는 ‘Atoms for Peace Program’하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취득한 남아프리카의 Safari-I 핵연구원자료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AEC는 비록 처음에 평화적 연구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노즐 혹은 보텍스 농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960년대 초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인터스터리얼 스케일 파일럿 플랜트(industrial-scale pilot plant)를 건설하는 결정이 1969년에 취해졌다. 그리고 UCOR

(Uranium Enrichment Corporation)가 펠린다바 동쪽에 위치한 발린다바(Valindaba)에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Y’ 플랜트의 첫 단계들이 1974년 말에 시작되었으며 이때는 남아공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 때라는 사실이 남아공 대통령 드 클레르크(de Klerk)가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커머셜 스케일(commercial-scale) ‘Z’ 플랜트 농축 시설이 펠린다바에 건설되었다.

1977년에는 이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개의 핵실험 샤프트가 칼라하리 사막지역에서 완공되었다.<sup>35</sup> 칼라하리 사막에 핵장치 테스트 사이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경이었다. 이것은 지하 핵실험을 위한 3개의 샤프트(shaft)로 구성되어 있었다. 1977년에 완공된 두 개의 샤프트는 180~200미터 깊이였다. 세 번째 것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포기되고 말았다. 1977년 8월 8일에 구소련의 관측위성이 칼라하리 사막 지역에 지하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끝내 미국과 구소련의 외교적 압력으로 폐기되고 말았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고 핵장치를 고안해 내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1977년 8월 고농축 우라늄의 코아(core)없이 조잡한 핵장치가 만들어 졌으며 1978년에는 그것 보다 좀더 작은 규모의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핵장치 관련 물질들이 1978년 1월에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1979년 후반 혹은 1980년 초반

<sup>35</sup> Mark Hibbs, “South Africa’s Secrete Nuclear Program: From a PNE to a Deterrent,” *Nuclear Fuel* (May 10, 1993), p. 3; Mark Hibbs, “South Africa’s Secrete Nuclear Program: The Dismantling,” *Nuclear Fuel* (May 24, 1993), p. 9; Mark Hibbs, “Pretoria Replicated Hiroshima Bomb in Seven Years, Then Froze Design,” *Nucleonics Week* (May 6, 1993), p. 6

<sup>36</sup> Mark Hibbs, “South Africa’s Secrete Nuclear Program: from a PNE to a deterrent,” *Nuclear Fuel* (24 May, 1993), pp. 3-6

까지 첫 번째의 핵장치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의 핵물질을 가지지는 못했다. 1979년 8월 기술적인 실패로 1981년 7월까지 플랜트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1989년 말까지 다섯 개의 추가 장치를 위해서 그 플랜트는 충분한 HEU를 생산하게 되었다. 플랜트의 가동은 1991년 2월 1일까지 지속되었다.<sup>37</sup>

핵장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핵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여있도록 하였다. 모든 핵장치들은 고도의 안전시설 내의 저장을 위하여 3개의 컴포넌트(component)로 분리하였다. 세 사람의 고위 관료가 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한 각각의 고유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는 관료가 모든 장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핵장치가 실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고위 관료가 동시에 함께 행동해야만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sup>38</sup>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남아프리카 관료들은 잠재적 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서방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한 소위 “3단계 핵전략(three-phase nuclear strategy)”의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사용할 어떠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1단계는 핵능력에 대해서 NCND(Neither Confirming Nor Denying)를 견지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절박한 군사적 공격에 직면하여 남아프리카는 서방국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개입을 강요할 수 있는 핵능력을 폭로하게 된다. 3단계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남아프리카의 능력과 의지를 시위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을 포함한다.<sup>39</sup> 공식적으로 남아프

<sup>37</sup> Darryl Howlett and John Simpson, “Nuclearization and Denuclearization in South Africa,” *Survival The IISS Quarterly* (Autumn, 1993), p. 157.

<sup>38</sup> Ibid.

<sup>39</sup> Frank V. Pabian, “The South African Nuclear Weapons Program: Lessons

리카 당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가 핵실험을 하였다는 소문은 여러 정황으로 설명되고 있다. 1979년 9월 22일 미국의 벨라(Vela) 위성이 남극대륙의 여러 지역들과 아프리카 남부지역을 포함하는 남대서양과 인도양의 한 지역에서 이상한 ‘이중 플래시(double flash)’를 탐지하였다.<sup>40</sup> 1979년 10월 미 당국은 그 위성은 약 2.5~3.0 킬로톤 정도로 핵폭발 흔적을 감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카터 행정부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폭발과 같은 그 시그널은 핵폭발에서라기보다 위성위에 있는 운성체의 충돌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까지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1979년 이 사건이 제기될 당시에는 남아프리카가 작동 가능한 핵장치를 건설할 정도의 충분한 핵폭발 물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1988년 남아프리카는 핵실험을 의미하는 3단계에 돌입하는 데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데, 그것은 앙골라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기플랜의 일환으로 칼라하리 사막 핵실험 지역에 있는 구멍의 하나를 재개방하였을 때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장치는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1978년 이전 것과 다른 하나는 1978년 이후의 것이다. 1977년까지 그 모델은 PN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플랜은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감손우라늄으로 된 노심을 가진 이 모델을 1977년 8월에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핵실험 장소가 발견되고 난 후에 이 플랜은 포기되었다. 1979년에 비축된 장치는 1977년에

---

for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Non-Proliferation Review*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fall, 1995), p. 9.

<sup>40</sup> Ronald W. Walters, *South Africa and the Bomb: Responsibility and Deterrenc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7), pp. 41-61. 참조

생산된 것 보다는 분명히 작은 것이다. 다음 10년 동안 디자인의 수정이 있어 왔다. 여러 정황을 살펴 볼 때, 그 디자인 장치는 필요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핵실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건 타입 디자인(gun-type design)’ 장치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히로시마 원폭을 위하여 사용된 ‘건-타입 디자인(gun-type design)’과 유사한 무기들은 비행기로 운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아공의 핵프로그램은 외국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였다. 몇몇 국가가 핵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남아프리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원조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75년을 거치면서 남아프리카와 독일 회사가 농축 기술에 있어서 상호 밀접한 협력이 있어 왔다. 미국 역시 PNE 차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원조하였다. 미국은 ‘Plowshar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남아프리카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문을 해 왔다. 남아프리카는 PNE가 광산산업에 유용한 것으로 믿고 AEC는 1971년 3월 평화적인 핵폭발 장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PNE에서부터 안보목적으로 강조점을 옮겨가는 정치적 결정은 1978년 10월 당시 보타(P.W. Botha) 남아공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Armscor(The Armaments Corporation of South Africa)에 특별히 안보에 필요한 장치를 생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41</sup> 또 다른 남아프리카 핵프로그램의 지원국은 이스라엘이다. 드 클레르크는 의회 연설에서 남아프리카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떠한 외국 원조를 받았거나 어

---

<sup>41</sup> Mark Hibbs, “South Africa’s Secrete Nuclear Program: from a PNE to a deterrent,” p. 4.

떠한 자체 또는 외국의 원조에 의한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sup>42</sup> 그렇지만 1997년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나. 남아프리카 핵 폐기 과정

남아공의 드 클레르크 대통령의 핵 폐기 결정은 남아공 대내외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9년까지 남아공의 대외적 안보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다. 1970년대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쿠바 군대가 앙골라에서부터 철수하였고 나미비아는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구소련은 점차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라져 감으로써 남아프리카로의 공산주의 확장 위협은 크게 감소되었다.

1989년 9월 드 클레르크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아공의 핵정책을 재평가하는 임무에 돌입하였다. 이것은 1989년 11월 건설된 핵장치를 파괴하거나 해체하고 파일롯 농축플랜트를 정지시키는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Armscor에 의해 사용되어오던 모든 핵물질은 국제적 안전조치 하의 보관을 위해서 AEC로 넘겨졌다. 핵장치를 제조하는 모든 시설들은 방사능이 제거되고 비핵용으로 전이되었다.<sup>43</sup> 또한 1990년 2월 26일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개발노력들을 중단하는 내부지시를 내렸다.

---

<sup>42</sup> Yossi Melman, "South Africa Admits: Israel Helped Us Develop Nuclear Weapon," *Ha'aretz* (April 20, 1997).

<sup>43</sup> Speech by State President F. W. de Klerk (24 March, 1993); "Regard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ewsletter* (Harare, Zimbabwe: South African Trade Mission, 25 March, 1993)



핵억제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비핵화 관련 임무를 Armscor와 AEC에 넘겼다. 대통령의 핵폐기 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검사관이 임명되었다. 1990년 7월 펠린다바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 해체, 6기의 핵장치 해체, 관련 하드웨어 및 기술문서 폐기 등이 뒤따랐다. 1991년 9월 초까지 모든 HEU는 변경되었고 AEC에 영구 보관을 위해 되돌려 졌다. 1994년 8월 19일 모든 사찰을 끝내고 IAEA는 하나는 부분적으로, 6개는 완전하게 핵장치들이 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sup>44</sup> IAEA 사찰이 남아프리카에 이루어 졌지만 그 사찰은 단지 공개한 시설과 핵물질에 국한되었다.

남아공이 NPT 가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은 1989년~1990년에 와서였다. 1989년 12월 비엔나에서 남아프리카와 미국, 영국, 구소련 간 남아공의 NPT 가입 이슈와 관련한 고위협상이 이루어졌다. 제4회 NPT Review Conference와 제34회 IAEA General Conference 시작 바로 후 1990년 9월 17일, 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한 동등한 약속 차원에서 NPT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였다. 남아공의 이 발언은 동시에 아프리카 핵무기 자유지대(NWFZ: Africa a nuclear-weapon-free zone)를 만드는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90년 9월까지 남아프리카는 이미 그들의 핵폐기 정책을 시작하고 있었다. 남아공의 핵폐기 정책은 남아공의 NPT 가입(1991년 7월 10일)이전에 완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아공은 사실상의 비핵국

---

<sup>44</sup> “IAEA Confirms All South African Warhead Destroyed,” *Reuters* (August 19, 1994); Michael Knapik, “South African AEC Head Says Stockpile of HEU Will Be Maintained for Ssfari,” *Nuclear Fuel* (August 16, 1993), p. 5.

가(de facto non-nuclear weapon state)로서 NPT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NPT 가입 당시 남아공은 기존에 어떠한 핵시설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NPT는 참가국에게 과거행에 대한 무분별한 행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현재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밝히는 의무만 부가하였던 것이다.

국제 핵공급자에 의해서 이전된 몇몇 시설들은 IAEA의 안전조치 하에 두었다. NPT에 가입하고 난 후 남아공은 1991년 9월 16일 IAEA와 INFCIRC/153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15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핵물질 생산기록을 보관해 왔다. 이것이 IAEA에 검증을 위해 제출되었다. 남아프리카는 1991년 10월 30일 IAEA에 최초 보고서에 이들 기록들을 담아 제출하고 1991년 11월 중순에 최초 보고서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작업을 하였다. 1992년까지 그 과정이 완결되었지만 드 클레르크는 1993년 3월까지 그 핵프로그램의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 3. 핵폐기 실패사례: 파키스탄

#### 가. 파키스탄의 핵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현황 분석

파키스탄은 1955년경에 핵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포괄적인 핵에너지 계획수립의 책임을 맡는 「저명한 과학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Nazir Ahmad 박사를 의장으로 하는 파키스탄 원자력 에너지위원회가 창설되었다. 1956년 이후부

터 수백 명의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의 Harwell를 포함하여 미국에 있는 Aragonne, Oak Ridge, 그리고 Brookhaven 실험실에서 핵 관련 교육을 받았다. 1965년에는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제공한 것으로 5메가와트 PARR 경수 및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였다. 비록 이 원자로가 10메가와트 급으로 확장되기는 하였지만 주로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의료 및 농업용 연구에 이용되었다. 실제로 파키스탄이 작은 규모로 1965년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를 가동하고 있었지만 1960년대 말까지는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5</sup>

파키스탄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패한 직후부터 그리고 1971년 Zulfikar Ali Bhutto가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부터 시행되었다. Bhutto는 “Multan에서 파키스탄의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핵 관계자들과의 비밀회의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sup>46</sup>는 그의 계획을 선언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1972년에 파키스탄은 125메가와트 파워의 원자로 즉, Karachi Nuclear Power Plant(KANUPP)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은 캐나다가 공급한 것으로서 천연우라늄과 CANDU형의 중수로였으며, 그 연료와 중수는 미국과 캐나다에 의해 공급되었다. 이 원자로는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였을 때, 핵무기를 4개~6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약 55kg의 플루토늄을

---

<sup>45</sup> Jed C. Snyder and Samuel F. Wells, Jr., eds., *Limiting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5), pp. 64-65; Shirin Tahir Kheli, “Pakistan,” in James Everett Katz and Onkar S. Marwah, eds., *Nuclear Power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2), p. 263.

<sup>46</sup> Steve Weissman and Herbert Krosney, *The Islamic Bomb* (New York: Times Books, 1981), pp. 43-46.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그 원자로는 1976년 파키스탄의 NPT 서명거부로 인하여 캐나다가 연료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단지 감축된 수준의 용량으로 가동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이 원자로는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가 전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Karachi Plant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공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2가지 경로를 통해서 핵무기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2가지 경로라는 것은 곧 자체의 시설 및 은밀한 방법을 통한 플루토늄 재처리와 농축우라늄에 의한 것이었다.<sup>47</sup>

1974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 1972년 비밀리에 추진해온 파키스탄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1973년에는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 관련하여 프랑스와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6년 3월 계약이 조인되었으나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반발로 인하여 파키스탄과 프랑스의 계약에 대하여 파문이 일게 되었다. 이 계약은 미국과 캐나다의 반발에 부딪혔다. 캐나다는 카라치에 있는 캐나다 제공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랑스 재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말것을 파키스탄에 특별히 요구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 재처리 시설을 오용할 것을 우려하여 파키스탄과 프랑스에 그 판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종용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78년에 프랑스는 이 계약을 취소하였다.<sup>48</sup> 그렇지만 작은

---

<sup>47</sup> Leonard S. Spector,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0), p. 90.

규모의 핵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파키스탄은 연간 10~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New Lab’으로 알려진 파일로트급 재처리시설을 거의 완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현재 이 재처리 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더하여 그것이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어떠한 플루토늄도 재처리 시설에서 추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기 위하여 제2경로를 통한 핵개발 능력 확보 노력을 계속하였다.

제2경로를 통한 핵무기 개발 노력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은밀히 도입한 기술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sup>49</sup> 이것은 1975년 압둘 카디르 칸이 파키스탄에 귀환함으로써 한층 더 가속되었다. 칸은 독일에서 훈련받은 야금화학자였으며, 1970년대 초에 비밀 Urenco 우라늄 농축공장에서 일한 바 있다. 칸은 파키스탄에 가스원심분리기에 대한 개인지식과 산업기술 제공자(주로 유럽)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파키스탄의 Kahuta 농축시설을 건설, 설치, 가동하는 책임을 맡았다. 칸은 마찬가지로 유럽식 원심분리기를 위한 홈친 플랜을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귀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노력은 홈친 방대한 프로그램에 의존해왔다. 그것은 네덜란드로부터 카후타 플랜트의 핵심기술에 대한 은밀한 획득으로 시작되었다. 우라늄 hexafluoride 생산을 위해서 서독으로부터

<sup>48</sup> Ibid., p. 90.

<sup>49</sup> “Report of the Inter-Ministerial Working Party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the ‘Khan Affair’” (Foreign Ministry of the Netherlands, October, 1979) (Mimeo, English version), Quoted in Leonard S. Spector, Ibid., p. 90.

전체의 시설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오기도 하였다. 또한 몇몇은 미국으로부터의 표리부동한 공급도 있었다.

1979년 이후 파키스탄은 핵 개발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제재에 놓이게 되었다. 1979년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원조단절은 1977년 Glenn-Symington amendment에 의거한 것이었다. 동 법안은 1977년 이후 우라늄농축 설비와 기술을 수입하고 이를 IAEA의 감시하에 두는 것을 거부하는 어떠한 국가에도 원조를 단절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아프카니스탄을 구소련이 점령함에 따라 미국은 6년 동안 농축우라늄 제재적용을 해제하였다. 대신 미국은 구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방어막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대규모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반소련군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다. 레이건 행정부 관리들은 원조를 회복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안보를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핵 비확산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1985년에 핵심발전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파키스탄은 공개적으로 결코 무기수준의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파키스탄은 그 문턱을 넘고 말았다. 1986년까지 파키스탄은 그의 첫 핵무기 장치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재료들을 생산해왔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코 파키스탄에 대해서 심한 압력을 가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어서 파키스탄과 지속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정보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미 1987년에 그들의 첫 핵폭발 능력을

획득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 파키스탄 정책의 아프간 관련 2중성은 Pressler amendment 로 알려진 1985년 법 제정에서도 드러났다. 이 법은 미국 원조 및 정부 대 정부 군사판매가 대통령이 매 예산 개시 때에 파키스탄이 핵폭발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될 위험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삭감될 것이라는 점을 규정하였다. 1989년 10월 중 파키스탄이 핵무장 쪽으로 보다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와 무기판매를 허락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1989년 증명서 교부는 파키스탄 수상 베나지르 부토가 무기급 우라늄에 대한 보다 많은 생산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한 바로 직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89년 후반 및 1990년 초반에 인도의 전쟁위협으로 말미암아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비축하고 있던 무기급 우라늄으로부터 수 개의 핵무기용 핵심품을 제조하였다. 이 때 소련 군이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철수하였고 미국 부시 정부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비보유사실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모든 원조와 대 파키스탄 군사판매를 전면 중단하였다. 당시 F16s와 다른 군사 하드웨어가 주문 상태에 있었으나 1990년 프레슬러 제재가 발효한 이후 F16s은 결코 이전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군사판매 금지가 무효화될 경우 무기를 인수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면서 1990년 10월 이후 계속적으로 구입자금을 지불하였다.

1991년 샤리프 수상은 무기급 우라늄 생산을 동결한다는 사실을 재천명하였다. 그 동결은 1998년 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sup>50</sup>

---

<sup>50</sup> Gregory Jones, "From Testing to Deploying Nuclear Forces: The Hard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지속하면서 총체적인 핵 무기 능력을 신장해 나갔으며, 다른 측면의 파키스탄 핵프로그램이 역시 진척되어 나갔다. 즉,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40MWt 원자로 건설, Golra의 농축플랜트 건설을 통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능력 확대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를 통해서 파키스탄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국가의 능력을 확대하고 Kahuta 농축 플랜트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5000개의 주문자 생산 마그넷 구입이다. 그것은 원심분리기의 초고속 회전을 지지해 주는 베어링의 핵심부품이다. 카후타 플랜트에서 사용되어온 원심분리기의 특수형에 알맞는 크기로 된 마그넷의 선적이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가 1995년 8월 이 사실을 눈치챌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링 마그넷이 카후타 플랜트를 위한 미래 준비용 공급으로서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카후타 혹은 여타 플랜트에서 우라늄 원심분리기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비록 미 의회법이 파키스탄에 제한적인 무기세일을 용인하였지만 1990년대 동안 미국은 주로 난민 등에 대해 원조하였다. 중국의 대 파키스탄 링 마그넷 원조는 파키스탄과의 관계선상에서 비확산 영향력 조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클린턴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그것은 곧 파키스탄이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원조는 본래 클린턴 정부와 많은 하원의원들이 Pressler 제재를 수정하고자 한 1999년 Brown amendment 비준 이후 파키스탄에게 확대되도록 했던 것이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플루토늄 생산능력 확보를 매우 활발하게 추

---

Choices Facing India and Pakistan,” *RAND Issue Paper* (July, 2000) 참조.



진하였다. 그 노력은 1998년 4월, 즉 파키스탄이 Khushab 원자로가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을 때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시설은 IAEA의 감시 하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마다 한 두 개의 핵무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 플루토늄은 파키스탄이 현재보다도 더 가볍고 작은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파키스탄의 전략 미사일을 위한 탄두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결국 1998년 5월 파키스탄은 일련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한 무기 형태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어떠한 공식발표도 없었다. 그렇지만 실험한 모든 무기는 단순한 핵분열 디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테스트들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그것으로 파키스탄이 10~15킬로톤의 무기 디자인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5월 28일 5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 테스트는 단지 한 번의 지진성 시그널만을 나타냈을 뿐이며 그것은 총 6~13킬로톤을 시사하는 동시폭발의 축적된 효과에 해당한다. 이 같은 단 한 번의 신호는 5번의 폭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국 과학자들을 의심케 하고 있다. 1998년 5월 30일에 있는 테스트는 2~8킬로톤에 준하는 지진성 시그널을 나타냈다. 그 테스트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다시 한 번 중단케 하면서 Glenn amendment 제재를 가동하였다.

2000년 2월 파키스탄은 Nuclear Command Authority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핵무기 개발 및 고용에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2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sup>51</sup> 이듬해 파키스탄은 이전에 칸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Khan Research Laboratories를 공고화했으며, 경

---

<sup>51</sup> U.S. Department of Defense,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2001.

쟁관계에 있는 Pakistan Atomic Corporation을 하나의 Nuclear Defense Complex로 만들었다. 파키스탄은 비록 인도가 재래식무기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no-first-use’ 독트린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독트린을 아직까지 언명하지 않고 있다.

## 나. 대 파키스탄 핵개발 억제 실패 원인과 결과

1947년 분리독립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파키스탄의 최우선 관심은 국가안보였다. 물론 모든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생존이다. 국가생존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은 국가전략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 특히 파키스탄은 분리독립 이후부터 이제까지 인도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와 세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 카슈미르 분쟁으로 알려진 1948년의 1차-파키스탄 인도전쟁, 제2의 카슈미르 전쟁으로 불리는 2차-파키스탄 인도전쟁(1964), 동파키스탄의 분리독립(방글라데시)을 초래한 제3차 파키스탄-인도 전쟁(1971)이 그것이다.<sup>52</sup>

특히 제3차 파키스탄-인도 전쟁에서 동파키스탄의 분리독립(방글라데시)에 의한 영토 상실로 파키스탄 국민들과 지도부들은 심한 군사적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동파키스탄에 소요가 발생하여 인도가 이에 개입함으로써 3차 파키스탄 인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인도군은 전쟁 개입 2주만에 동파키스탄의 수도 다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항전하던 9만 3천명의 파키스탄군이 항복해 옴으로써 인도측의

---

<sup>52</sup> Sumit Ganguly, *The Origins of War in South Asia: Indo-Pakistan Conflicts since 1947*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6) 참조.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 전쟁의 결과로 동파키스탄이 신생국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고 파키스탄은 국토의 상실이자 1947년 독립 이래 또 다시 국가의 분할이라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남아시아 역내에 유지되어 오던 세력균형 관계는 파키스탄이 분할됨에 따라 파키스탄의 세력은 반감된 데 비해 인도의 세력은 남아시아 지역의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sup>53</sup>

파키스탄인들은 이러한 결과가 그들의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력을 보면 인도, 파키스탄의 지상군이 각각 90만/45만이었고, 전차 1천 3백/7백, 대포 3천 7백/9백, 그리고 전투기가 6백25대/2백70대로 인도의 군사전력이 단연 우세하였다. 사실상 재래식 전력 면에서 보면 주요 무기체계의 전 분야에서 인도가 우위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모든 군사력을 그들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대부분 자주화 한 인도에 비해 파키스탄은 방위 필요성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였다. 전략은 주로 미국과 중국과의 보다 밀접한 안보와 방위산업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sup>54</sup> 따라서 3차 인도와의 전쟁 대패 이후 파키스탄은 장래의 국가 존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확산되었으며, 그들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파키스탄의 재래식 군사전력의 강화는 파키스탄의 재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호적 관계

<sup>53</sup> 라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 인하대학교, 1999), p. 105.

<sup>54</sup> Kim, Taewoo, *Nuclear Proliferation: Long-term Prospect and Prospect on the Basis of a Realist Explanation of Indian Case*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New York at Buffalo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1989), p. 281.

에 있는 주변 강대국, 즉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핵위협 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방어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도 한계성이 있음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파키스탄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동맹관계로 발전했다.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남아시아의 중요성에서,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미국-파키스탄 안보동맹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미국-파키스탄 안보동맹은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1945년 5월 양국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MAD), 둘째, 미국 주도의 동남아집단안보기구인 SEATO 결성, 셋째, 1958년의 바그다드조약 가입, 넷째, 미국 파키스탄 협력협정 체결 등이 그것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바래 왔고, 카슈미르 분쟁에 있어서도 유엔 등에서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해주기를 기대해 왔다. 미국은 재래식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적 원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1964년까지는 비교적 관대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호의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군사적 원조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은 상당히 취약한 것이었다. 미국은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동안 그 지역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금지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군사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파키스탄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 이어서 1971년, 1979년 미국이 연속적으로 대 파키스탄 무기수출에 대한 엠바고를 단행함으로써 파키스탄의 국방계획과 국방정책 옵션을 크게 제한하기에 이르렀다.<sup>55</sup>

---

<sup>55</sup> Stephanie G. Neuman(ed.),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4), p. 216.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시 파키스탄측은 인도가 전면전을 개시해 올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미국의 개입을 끌어들이며 즉각 종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사실이였다. 당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인도와는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원조는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인도의 전쟁 개입을 억제하는 데 미국이 행동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직접적인 군사원조는 ‘공산주의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이 아닌 인도로부터의 침공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 역시 전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sup>56</sup>

이와 같이 인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보장을 우호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기대하기도 곤란하지만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신뢰성을 가질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파키스탄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인도에 대한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위협에 대한 억지능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1966년 파키스탄의 전 대통령 부토가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파키스탄은 풀잎을 먹고살더라도 핵을 개발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sup>57</sup> 또한 주 인도 및 소비에트 전 대사였던 Sajad Hyder는 “파키스탄은 믿을만한 핵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도를 억제할 수

<sup>56</sup> 라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 p. 104.

<sup>57</sup> Z.A. Bhutto, *If I Am Assassinated* (New Delhi, Vikas, 1979), p. 138.

없을 것”<sup>58</sup>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도 하다. 핵확산의 동기적 이론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인 Lewis S. Dunn에 따르면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파키스탄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해 주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며, “단 몇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능력만 갖게되더라도 인도와 상호 핵억지에 기초하여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sup>59</sup>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인도가 1974년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무장을 적극화해 나가는 상황에 직면하여 파키스탄의 직접적인 안보불안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였다. 파키스탄은 1968년 UN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토의할 당시 인도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기를 원했다. 동시에 1972년에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비핵지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인도의 핵무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sup>60</sup> 그러나 인도가 예정대로 핵실험을 단행하자 파키스탄의 핵무장 필요성은 한층 더 제기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파키스탄의 핵무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도로부터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보적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핵억지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 지도부가 인도의 핵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원자폭탄을 갖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sup>61</sup>

<sup>58</sup> The Muslim (Islamabad), March 2, 1984, in T.V. Paul, p. 44.

<sup>59</sup> Lewis A. Dunn, *Controlling the Bomb: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1980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45.

<sup>60</sup> Pervez Hoodbhoy, “Pakistan and the Deep Cuts Regime,” in Harold A.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p. 370.

이외에도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촉진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국제적 지위 제고이다.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부터 이슬람국가들의 지도국이 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2</sup> 파키스탄의 핵은 곧 이슬람 자존심의 원천이며, 그것은 곧 이슬람국가들 사이에서 파키스탄의 국가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게 된다. 또한 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파키스탄의 지위 제고를 위해서 핵개발을 필요로 하였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 대비한 지역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적 지위 제고에 대한 필요성은 독립 이후부터 줄곧 추구해온 인도와의 동등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 K. Wariaawalla는 파키스탄에 있어서 그 자신이 결코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항상 유지해온 인도와의 외교적, 군사적 동등지위는 그 자신의 생존조건이 되어왔다고 밝혔다.<sup>63</sup>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닌 인도와의 동등지위 획득을 위해서 파키스탄이 핵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자연스러

<sup>61</sup> Woong Chun,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for Selected Countrie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1991), pp. 116-118.

<sup>62</sup> T.V. Paul, "Reaching for the Bomb: The Indo-Pak nuclear Scenario" (New Delhi: Dialogue Publications, 1984), p. 46; 그러나 Pervez Hoodbhoy는 Kroc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가 1966에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슬람의 단결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의 주요한 동기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초한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원히 적대적일 것이라는 가정과 인도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 또 다시 파키스탄을 찢어놓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둘째, 카시미르 반군단체 보호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방패 제공 열망, 셋째, 1974년 이후 인도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인식, 넷째, 핵무기가 제공하는 민족주의적 열광. Pervez Hoodbhoy, "Pakistan and the Deep Cuts Regime," pp. 369-370.

<sup>63</sup> 와리아브왈라(B.K.Wariaawalla), "남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 박재규 (편),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79), p. 194.

운 반응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키스탄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핵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키스탄이 매일 100만 달러를 오일수입에 투입하는 것은 파키스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있는 중요한 사실임이 지적돼 왔다. 이와 같은 석유수입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파키스탄은 1990년대까지 24기의 원자력 발전로 건설과 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는 핵력개발에 의한 시급한 에너지문제 해결 이외에 핵발전의 개발확장이 탈염 공장의 건설 가동을 가능케 하고, 용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사막 등 파키스탄에 많은 불모지의 개발이 가능케 되며, 그 결과 식량생산 증대로 파키스탄에 많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워 왔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막대한 자원과 예산을 원자력개발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64</sup>

또한 상황적으로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민족주의를 주요한 동력으로 간주해온 강력한 정치, 군사, 관료세력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핵프로그램들은 압도적인 국내적 지지를 향유했다. 파키스탄에서는 핵무기 개발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한 국민적 동기가 존재하였다.<sup>65</sup>

그런데 일국이 핵개발을 강행해야만 하는 강한 동기들이 많이 있다 해서 반드시 핵개발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장애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6</sup> 먼저 파키스탄의

<sup>64</sup>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의 핵정책』 (서울: 법문사, 1981), pp. 94-95.

<sup>65</sup> Brahma Chellaney, "The Challenge of Nuclear Arms Control in South Asia," *Survival*, vol. 35, no. 3 (Autumn, 1993), p. 127.

<sup>66</sup> Woong Chun,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재처리 시설을 위한 물질들이 국제적 안전조치 규범 하에 놓여 있어서 이들 물질들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976년 캐나다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여 파키스탄과의 핵 관련 공급약속을 취소해 버렸다. 1978년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핵재처리시설 건설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다. 파키스탄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주로 핵공급국에 의존되어 있는 경향이 심해서 만약 이들 핵공급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되면, 곧 파키스탄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핵물질 관련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인식해 왔을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이 핵관련 국제적 규범을 어기거나 무시하였을 때,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간파하게 된다면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동결하는, 대 파키스탄 엠바고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 파키스탄 군사적·경제적 원조는 파키스탄의 경제건설이나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축소 또는 동결은 파키스탄에 직접적으로 매우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는 곧바로 적대적 분할국인 인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인도와 파

---

*Comparative Study for Selected Countrie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1991), pp. 121-124 참조.

키스탄과의 관계는 보다 악화될 것이며 인도의 핵무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보유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파키스탄의 경제적, 군사적 입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인도의 파키스탄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특히 파키스탄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제한적인 핵공격으로도 타격이 심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곧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핵무장 선택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파키스탄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은 파키스탄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제약요인으로 인정된다. 즉 인도와의 핵군비 경쟁은 곧 파키스탄의 심각한 경제적 비용으로 귀결된다. 이에 더하여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공표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대외적 경제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는 파키스탄 경제를 아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에 이어 곧바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따라서 파키스탄과 같은 심각한 안보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국가에게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제 억제요인은 결국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파키스탄은 몇 시간 혹은 며칠 내에 소량의 핵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구성품들과 재료들을 가지게 되었다. 30개~50개 정도의 핵탄

두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급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파키스탄은 585~800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과 3~5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비핵폭발물로부터 분리된 핵분열성 물질 코어(fissile core)와 함께 구성품 형태(component form)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키스탄이 핵분열성 물질과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파키스탄은 NPT에도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미국-파키스탄 관계의 발전된 상황은 미국의 핵제재에 관련한 정책을 다시 바꾸어 놓았다. 파키스탄은 국제 테러리즘에 맞서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 번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있어서 전선국가(frontline state)가 되었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에 응답하는 무샤라프의 결정 결과 모든 핵무기 관련 제재는 해제되었다. 1999년 10월 무샤라프를 대통령으로 오르게 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파키스탄에 내려진 민주주의 관련 제재 또한 해제되었다. 이 제재들의 해제와 함께 파키스탄은 미국이 F-16s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샤라프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자산들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미국 연합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곳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 및 미사일 기지에 대한 예방공격을 가하기 위하여 파키스탄 서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행동상의 유리한 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그러한 예방공격 사태를 막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아 이러니컬하게도 무샤라프의 결정 결과 시민봉기 가능성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자산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sup>67</sup> 전문

가들은 미국이 파키스탄의 방사성 물질과 무기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원제공을 고려하도록 주장하고 있다.<sup>68</sup>

#### 4.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우크라이나의 핵탄두 이관, 핵 폐기 보상 및 지원,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주된 협상이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에서 진행된 결과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물론 1994년 1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정상 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핵문제 해결관련, 합의가 도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의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양자간의 협상이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의의 참가자나 경제적 지원자 역할만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관련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제3자로서의 협상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점을 누렸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된 역할을 하고 관련 당사국인 남한이 오히려 선의의 참가자(good will player) 역할을 해옴으로써 북한과 남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접근을 남북한간의 핵협상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여기에서 최종적으

---

<sup>67</sup> George Perkovich, at Carnegie Proliferation Roundtable, "Pakistan's Nuclear Dilemma," September 26, 2001.

<sup>68</sup> John Wolfsthal, "U.S. Needs a Contingency Plan for Pakistan's Nuclear Arsenal," *Los Angeles Times*, October 16, 2001.

로 3자(남북한, 미국)간 합의로 이끄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핵협상에 있어서 또 다른 시사점은 핵포기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었다. 안전보장 관련,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미국 뿐 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참가한다는 다자적 차원의 안전보장 약속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핵 포기 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서방 강대국들까지도 이에 참여 시킴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1994년 1월 핵 폐기 합의 후 우크라이나가 핵 폐기를 위한 국제기금을 설립한 것과 같이 북한의 핵 폐기시 국제적 차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 역시 약속 이행 관련 북한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였다가 자발적으로 폐기한 대표적인 국가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실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압력과 제재를 받아온 국가였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자 하였던 동기가 바로 인종차별 정책 고수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국제적 압력(특히 흑아프리카 제 국가들의 침공 위협,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 위협)에서 벗어나거나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 확보 차원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남아공이 이러한 직접적인 동기가 그들의 인종차별정책 종식을 결정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결과 남아공의 드 클레르크 백인 정권이 핵무기 폐기 결정을 동시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핵무기 개발 포기

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핵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핵개발 동기 자체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핵개발 동기가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어떠한 압력이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파키스탄의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분쟁과 위협에 시달려 온 국가다.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어 왔지만 이는 인도의 군사적 위협이나 분쟁 예방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간파하게 되었다. 1966년 파키스탄의 전 대통령 부토가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파키스탄은 풀잎을 먹고 살더라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제재 등 갖가지 압력이 있었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핵관련 직접적인 압력이나 제재는 결코 핵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 제재는 가변적이어서 더욱 더 효율성이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 파키스탄 제재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은 대 테러전쟁의 필요성 때문에 파키스탄에 내려져 왔던 제재를 해제하였다. 파키스탄은 대테러전쟁을 위한 미국과의 연합으로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예방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믿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북한의 핵 폐기 전망과 북·미관계

## IV

### 1. 북한의 핵 폐기 전망

#### 가.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

현재 북한은 핵문제로 인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제재 또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이를 다른 ‘불량국가’들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이전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이라크전쟁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수단의 선택은 북한의 살상무기 개발 억제를 위해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어서는 강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선봉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들의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 공동선언 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sup>69</sup>이라 주장한 데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한 예방공격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페리 전 미국방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우리는 94년 상반기의 대부분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며 보냈다”고 하면서 “북한은 당시 영변의 핵시설에서 국제사찰 요원들을 추방하고, 수개월 안에 핵무기 6기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질 작업을 시작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미국은 정밀유도폭탄으로 영변의 시설을 공격할 세부계획을 준비했고 “원자로의 노심 용해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에 유출되는 일이 없이 영변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페리 전 장관 등은 “오늘 날에도 재래식 전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sup>70</sup>

<sup>69</sup>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2002년 10월 25일.

<sup>70</sup> 『동아일보』, 2002년 10월 2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현재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에 대한 담보도 약화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하여 군사적 제재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 상정돼 제재가 결정될 경우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공산당 당고 장리엔웨이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내달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9월께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하면서 중국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sup>71</sup>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의 과거 안보동맹관계를 청산했지만 북한의 위기 시 여전히 안보적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함께 주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역시 북한 핵 폐기를 강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하게 될 경우 이는 국제적 저항을 초래하게 되어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심화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원조 가능성도 현저히 축소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역시 중단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남한의 반응은 경제지원 중단에만 머물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로 밝혀지게 될 경우 남한의 안보의식을 자극하게 되어 남한의 군비증강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더욱 보

<sup>71</sup> 『한국일보』, 2004년 10월 12일.

강됨으로써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북한의 핵 폐기 결정을 자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제재 위협과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의 생산, 보유, 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동기적 요인들이 약화 또는 해소됨이 없이 강하게 남아 있다면 파키스탄과 같이 결국 핵국가로의 진입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동기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군사안보와 관련하여 비핵국가들은 핵공격, 재래식 군사력 공격 또는 주변 적대국의 핵무장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무장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sup>72</sup> 북한 역시 이러한 군사적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한·미연합군사력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의지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어 왔지만 미국은 여타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한미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 안보의지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 휴전 이후 잔류하게 된 주한미군 2개 보병사단은 핵무기로 장비를 갖춘 5개 전투단으로 편성된 펜토믹(Pentomic)사단으로 개편되고 1958년 1월에는 재래식 포탄이나 전술핵 탄두를 다같이 발사할 수 있는 280mm 원자

---

<sup>72</sup> George Quester, *The Politics of Nuclear Prolifer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p. 6-7; 이외에 핵개발 동인으로서 군사안보를 위한 억지요인을 지적한 학자는 다음과 같다. Beaton & Maddox(1962), Rosecrance(1962), Barnaby(1969), Wilrich & Taylor(1974), Dunn & Overholt(1976), Greenwood(1977), Kapur(1978), Lefever(1979), Betts(1980), Dunn(1982), Potter(1982), Meyer(1984), Reiss(1988).

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네스트 존을 보유하게 되었다.<sup>73</sup>

물론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일차적으로 억지 그리고 다음으로 방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조선에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뿐만 아니라 우리주변 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sup>74</sup>고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핵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조선에는 핵폭탄을 비롯한 1000여 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의 밀도는 나토 성원국들에 전개된 핵무기의 밀도보다 4배나 높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종 핵무기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연습고동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sup>75</sup>

또한 남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군사력 증강추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미상호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지속적인 대남한 군사지원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한층 더 자극하였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원자력기술발전에 따른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피터 헤이즈 박사가 한국이 “보유한 핵기술 능력으로 볼 때 한국은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업적 기반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sup>76</sup>고 주장한 바와 같은 한국에 대한 핵위협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북한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1975년 6월 26일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sup>73</sup>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나남, 1991), p. 213.

<sup>74</sup> 『로동신문』, 1986년 6월 24일.

<sup>75</sup> 『김일성 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29.

<sup>76</sup> 『시사저널』, 1992년 8월 13일.

의 회견에서 만약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후퇴하면 생존을 위하여 핵 무기 개발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하였을 것이다.<sup>77</sup> 물론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개발노력은 미국의 적극적인 저지노력으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핵무장 노력과 주한미군의 핵무장은 평양정권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sup>78</sup>

북한의 핵무장은 구소련 및 중국에 대한 과도한 군사적 의존성에서 탈피케 함으로써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내부간섭으로부터 자주적 노선 또는 자치의 여지를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권의 두 강대국으로부터 심리적, 정신적 개입의 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군사적 침공과 같은 물리적 개입의 위협을 일찍부터 인식해 온 것으로 보인다.<sup>79</sup>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강대국의 물리적 개입과 외부사조의 침투에 직면하여 차단과 단절 그리고 독자적인 사상무장 및 물리적 힘(군사력)의 축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이러한 필요성은 무기체계의 자주화에 더하여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 건설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국내외적인 정치적 지위 또는 위신)을 들 수 있다.<sup>80</sup> 김일성은 정부수립

<sup>77</sup> 예를 들면 미국은 1976년 6월 프랑스의 플루토늄 재가공 기술과 공장(플루토늄 분리공장이라고도 함)에 대한 한국의 구매교섭이 핵폭탄 제조 용도라 하여 이의 취소를 위해 강력히 압력을 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핵 정책』, p. 216.

<sup>78</sup> Leonard S. Spector,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890-1990*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0), p. 124.

<sup>79</sup> 정영태, 『북한의 국방계획결정체제』, 연구 보고서 시리즈 97-18 (서울: 통일연구원, 1997) 참조.

<sup>80</sup> 핵개발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을 지적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Beaton & Maddox(1962), Rosecrance(1964), Quester(1973), Willrich & Taylor(1974), Jensen(1974), Dunn & Kahn(1976), Dunn & Overholt(1976),

이후 그의 유일지배체제 확대를 위하여 무력적 방법으로 남한을 침략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적화통일의 당위성과 ‘제국주의’(특히 미국)의 위협을 과장,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사력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인민을 세뇌시켜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대남무력적화통일 당연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군비증강 정책을 정당화 해왔다. 이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되는 유일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기능해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 유일지배권력의 정통성을 주체사상에서 찾고자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유일지배정권은 주체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주체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열망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러한 북한의 강국건설 의지를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은 한반도에 있어서 핵무기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실제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미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아가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며 돌아가겠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습니까. 적들이 핵무기를 쓰면 자기편도 죽습니다”<sup>81</sup>라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무용론을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한 두 개의 핵무기로 수 천 개 수 만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하기는 어렵다”<sup>82</sup>고 밝힘으로써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

Greenwood(1977), Kapur(1978), Betts(1980), Lefever(1979), Dunn(1982), Potter(1982), Meyer(1984), Reiss(1988).

<sup>81</sup>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68.

<sup>82</sup> *The Washington Times*, April 15, 1992.

이에 반해 북한은 1964년 10월 중국의 핵실험 성공과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원자폭탄의 성과적인 폭발은 중화인민 공화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이것은 중국의 공업 및 과학 기술이 새로운 발전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새 전쟁도발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sup>83</sup>고 주장한 것은 핵무기가 ‘사회주의 강국’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상징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작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정치적 이미지 구축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해 왔을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가 그 자체로서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작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이미지를 구축하여 대내외적인 정치적 위신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유일지배정권 안보를 추구해온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로서 ‘작은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정치적 위신(political prestige)과 협상지위(bargaining position) 및 자치(autonomy)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의 핵개발 동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보적 차원의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만이 그들의 정권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변화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핵 폐기와 같은 핵무장 완전 해제의 길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에서 ‘핵시설 동결 대 보상’이라는 공식에 합의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

<sup>83</sup> 『로동신문』, 1965년 10월 26일.

이 그들의 전면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핵시설 동결 대 보상’ 공식을 수용하더라도 그들이 기 개발한 핵물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예: HEU)을 통해서 은밀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핵무장 옵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공식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프레임 워크’를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일체의 합의 사항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의 제네바 핵합의의 예는 향후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제네바 핵합의에 있어서 몇 가지만 보완한다면 북한의 핵문제 관련, 북·미 양측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94년 제네바 핵합의 구도를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새로운 북·미 핵합의 방향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북·미 핵타결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다고 선언한 이래 16개월에 걸친, 그리고 3차에 걸친 미 북한 고위급회담의 산물이다. 먼저 미·북한간 핵타결 합의문<sup>84</sup> 내용을 구

<sup>84</sup> 이춘근, 『북한 핵의 문제: 발단, 협상과정,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1995), 부록 #23(1994년 10월 21일 북한-미국 기본합의문, 한글 텍스트), pp. 304-307 참조.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의 흑연감속로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한 합의 사항이다. 먼저 미국측이 북한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미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서한<sup>85</sup>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량 약 2천 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미국의 주도 아래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해 북한과의 주요한 접촉 상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컨소시엄 대표로 합의문서 서명 후 6개월 내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 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하기로 하였다.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증유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서명 후 3개월 내에 연간 50만 톤 규모로 공급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북한측이 이행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서는 그들의 핵시설 동결문제였다.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동 기간과 전체 동결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북한 당국은 국제원자력 기구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이 해체의 완

---

<sup>85</sup>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은 보장서한에서 북한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경수로 지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이 책임을 진다는 보장 내용을 밝혔다.



료는 경수로 사업이 끝날 때로 하였다. 그리고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핵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 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북한 미국 양측이 협력하도록 하였다.

둘째, 북·미 쌍방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문제다. 합의 후 3개월 내 쌍방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 개설,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노력 관련 문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제적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대한 협력 문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여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고,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핵 활동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 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되도록 하였다. 경수로 공급 체결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되도록 하였다.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단지 미국측의 경수로와 대체 에너지(중유)제공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경수로 사업 완료에 따라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시설을 해체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합의 방식은 핵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보다 이를 해결하려는 미국 측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합의 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핵활동 동결 관련 사항을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합의이행 상황을 트집 잡아 그들의 핵동결 이행 활동을 한시라도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은밀하게 다른 핵 시설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이를 이유로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만약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행 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핵동결 중단 위협카드로 맞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이 상당한 기간 동안(약 10여 년)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의 폐기를 위해서 북한에게 강제하기 어렵도록 되어있다.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재개로 북한의 동결대상 핵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으나 과거 핵 의혹이나 여타 은밀히 추진되는 핵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핵활동에 대한 IAEA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IAEA의 안전조치를 위한 사찰활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사찰의 경우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사업자의 기록내용을 비교확인하며,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양, 위치, 동일성, 성분의 검증이 이루어지며, 기록재고상의 미계량, 선적·인수의 차이 및 불확실성 원인에 대한 정보의 검증 등이 이루어진다.

임시사찰의 경우, 협정체결 후 최초보고서에 포함된 핵물질 및 시설에 관한 초기정보를 검증하고 최초 보고일자 이후에 발생한 핵물질 및 시설의 변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증하게 된다. 핵물질의 국외 반출 또는 국내 반입후 실시하는 사찰이 바로 임시사찰이다.

일반사찰이나 임시사찰은 사찰활동이 제한적인 데 반해 특별사찰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검증방식이다. 즉, 특별한 상황(핵물질에 대한 불의의 변동)의 발생으로 국가가 제출한 특별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활동을 하며 정기사찰에 추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나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부적절한 것으로 IAEA가 간주할 때는 임의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검증방식이 바로 특별사찰이다.<sup>86</sup> 북한과 같이 핵개발 의혹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국가에 대한 핵활동 검증은 IAEA의 특별사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는 특별사찰에 준하는 대북 사찰활동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부품의 인도 이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IAEA의 대북 핵투명성 활동은 최소한 10여 년간의 공백을 가지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측의 대북 중유제공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경수로 건설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동안 북한은 HEU 방식을 통한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환경이란 북한이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이라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들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과 관심이 완화된 틈을 이용하여 은밀히 안전하게 또 다른 핵개발 활동을 펼칠 수

---

<sup>86</sup> 남만권,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현황 및 사례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1), pp. 57-58.

있었던 환경을 지칭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북 핵협상의 기본방향은 더 이상 북한의 은밀한 핵개발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허락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핵개발 폐기 조치”가 전제되는 대북 핵합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IAEA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북한의 핵폐기 관련 조치들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전에 북한이 5MWe 원자로에서 방출하였을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6.9~10.7kg Pu 추출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5MWe 원자로의 흑연감속제 그리고 재처리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능 폐액의 샘플채취를 위한 IAEA의 특별사찰이 필요하다. IAEA 특별사찰의 경우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3~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IAEA가 핵사찰 검증범위를 북한과 협의하는 데 수개월, 특수 장비들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데 1년 정도, 검증을 위한 핵사찰을 수행하는 데 2~3년 정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북한의 실제 핵사찰 수행기간을 최소 2~3년으로 한 근거는 남아공의 전례에 근거한 것이다. 독일에서 들여온 기술에 근거한 남아공의 신고기록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 자체기술에 근거한 기록이라는 것과 더군다나 10여 년 이전의 기록을 회수해서 검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남아공의 핵사찰 기간 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대로 기록을 하였는지 기록은 제대로 남아 있는지 조차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2003년 10월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하였다는 8000여 개 사용후 핵

연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25~30kg Pu의 추출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것이다. 검증절차는 1994년 이전 플루토늄 검증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북한의 HEU 프로그램 검증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심인 원심 분리기는 전력소비가 적고 분산운영이 가능하며,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므로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의 의심지역에 대해 반경 수km 범위에서 환경시료를 채취해 미량의 우라늄 분진이 포함됐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군사기지와 지하 병크 등 군사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sup>87</sup>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이 이행된다면 미국은 핵개발을 추진해 왔던 북한의 제반 동기적 요인들을 상당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과감한’ 대북접근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2. 북한의 핵 폐기 결정 이후 북·미관계

### 가. 북한의 대미접근 방향

북한은 우선 미국과 고위급 정치·군사협상을 시작하고 이를 ‘상호안보협의체’로 정착시켜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 연구 관련 재미학자로 알려져 있는 한호석은 ‘상호안보협의체’를 “평화

<sup>87</sup> 이 부분은 한국원자력 정책연구소 강정민 박사의 자문내용을 참조하였다.

협정(조약)체결로 가는 복잡하고 긴 협상과정에서 거쳐가는 ‘중간적인 조치’로 정의한 바 있다.<sup>88</sup>

또한 그는 북한이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미협상의 내용과 성격을 단순히 ‘정전체제 대체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군사·경제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안보문제’로 확대하여 ‘상호안보 대화’를 요구하고”있다고 함으로써 ‘상호안보협약체’가 정치·경제·군사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5년 9월 19일부터 1주일 동안 방북한 미국의 셀릭 해리슨을 통하여 “북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체제’(New peace mechanism)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주둔을 용인하는 대신, 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평화체제’란 “먼저 ‘조·미 상호안보협약체’를 구성하고, 이 협약체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이중구조의 평화 보장안을 뜻한다”고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조선)은 현재 조건에서 조·미평화조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평화조약체결이 조·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보지만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였다.<sup>89</sup>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우선적으로 ‘조·미 상호안보협약체’를

<sup>88</sup>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인터넷 자료, 1996년 4월 3일, p. 9.

<sup>89</sup> 한호석, “개입·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동향,” p. 7.

구성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통한 정전협정체계를 와해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일차적 대미접근 목표로 삼아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호석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안보대화’가 시작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지난 냉전시기 동안 북(조선)을 망나니 정권(rogue regime)이라고 비난·공격하면서 북(조선)을 적성국으로 규정하여 적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봉쇄·대결전략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하고, 북(조선)을 겨냥한 공격의지를 내포한 모든 군사훈련, 군비증강을 포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탈냉전적 전략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질서를 탈냉전시기의 전략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개입·확장 전략’에 기초하여 한·미상호기본조약의 기본성격을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 조약을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포괄적인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추구하는 법적장치의 일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역내의 포괄적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으로 그 존재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sup>90</sup>

또한 그는 “북(조선)이 ‘조·미안보대화’ 창설구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군비의 감축이다”라고 하면서 “북(조선)이 조·미안보대화를 통하여 군비감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북(조선)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조선)반도의 군축문제를 평화체제 수립론과 통일국가 수립론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sup>90</sup> 위의 글, p. 9.

논리적 뒷받침을 받는다. 북(조선)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비롯한 남북의 군축문제는 조국통일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sup>91</sup>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북·미 안보대화’라는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여기에서 한반도의 주요 군사문제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 문제, 남북한군축 문제 등을 협상하면서 한·미 군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단계적 전략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폐기 결정은 최소한 그들의 이와 같은 요구가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 요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반도에서 미국이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동시에 남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관계를 북한 쪽으로 돌리거나 최소한 대등한 정도의 관계 수준으로 바꾸어 놓고자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어느 한편(남측)에 자동 개입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중립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한미동맹하의 ‘자동개입’ 원칙의 폐기 또는 무실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켈리특사의 방북 이후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밝혀온 평양 당국의 공식 입장표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미 강경정책에 대해서 맹비난 하면서 북·미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미사이의 대결이 해소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북·미간의 대화에 대한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고

---

<sup>91</sup> 위의 글, p. 10.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우리는 클린턴 집권 시기 미국과 여러 갈래의 대화를 진행 했으며 공동 코뮤니케도 발표했다”<sup>92</sup>고 말함으로써 최소한 클린턴 행정부 시기 유지되었던 미·북 대화관계를 우선 복원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하 미·북관계는 전반적으로 앞서 밝힌 북한의 대미안보대화 채널 구축 목표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 요구에 이어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미국이 자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약하며,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다는 조건하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그들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로 ‘핵폐기와 미사일 중단’을 ‘체제보장과 불가침보장’, ‘경제발전 제약제거 및 관계 정상화’로 맞바꾸자는 단계별 포괄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최근 6자회담을 참가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sup>93</sup> 북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는 바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현존질서를 변화시키는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관

---

<sup>92</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19일.

<sup>93</sup> 『중앙일보』, 2004년 10월 22일.

런, 북한은 1960년대에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최고 인민회의는 1974년 3월 미국 상·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최초로 제의하였으며, 1984년 1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명의의 「서울 당국과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과 대미 평화협정 동시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유엔, 북한, 중국의 각 사령관이지만, 중국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하였고, 대부분의 유엔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이므로, 미국과 북한이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한다. 반면 남한정부는 ‘미제국주의자의 괴뢰’로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모든 한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협정관련 기본개념에 있어서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을 한반도의 평화적 분단극복을 위해서라기보다 북한 자체의 대남적화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벌여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남한의 대북 안보장치를 약화시킴으로써 「남조선의 해방」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기반 조성 차원에서 북·미간 불가침협정의 체결 요구는 상당한 현실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간 불가침협정이 ①전쟁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②유엔군 사령부 해체, ③미군철수 또는 감축 등과 같은 문제를 포괄하는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다. 국제법 측면에서도 북·미간 불가침협정은 평화협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불가침협정은 현존 질서의 바탕 위에서 침략을 예방하는 사전 조치로서 영토적·정치적·군사적 기존상태를 확인·선언하는 협정인 데 반해, 평화협정은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대미 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는 전쟁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한 미군감축 등과 같은 문제를 포괄하는 내용을 전제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 나. 미국의 대북접근 방향

미국의 대북접근 방향은 각 정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냐에 따라서 대북 접근방향은 기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정부의 경우 적극적인 대북포용 정책을 사용하여 단계적인 북한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 주한 미대사 레이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연설(1996. 5. 11)<sup>94</sup>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반세기 동안 남북한 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억제(deterrence)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하면서 “억제에 바탕을 둔 이 관계는 대단히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이 ‘억제정책’이었음을 솔직히 밝혔으며 이 정책이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매우 효율적이었음을

<sup>94</sup> 제임스 T. 레이니, “남북한: 억제(deterrence)를 넘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문, 1996년 5월 11일.

인정하였다.

즉 그는 “청와대 습격, 아웅산 폭탄테러, 그 밖의 테러 행위, 프에 블로호 납치사건과 가장 최근 들어서는 93년과 94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었으며, “이 억제력은 남북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 주었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효율적이었음을 솔직히 피력하였다.

그런데 레이니는 억제전략은 “그 수명이 다된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있는 한, 억제는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지만 “이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문제는 북한의 약화와 절망”이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오늘날 한반도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를 억제력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구축조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함”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고 인식하였으며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려 결국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의 대북한관을 살펴보면, 구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북한은 주요 후원자이자 동맹국인 동시에 큰 교역상대를 잃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경제원조를 거의 중단해 버린 결과 북한은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동독, 루마니아, 구소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필요한 개혁·개방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반면 남한과의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북한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막다른 상황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군사적 도발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북한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전국방차관보였던 나이(Joseph S. Nye, Jr.)도 “예를 들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건물의 12층에 사람이 갇혀있다고 치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뛰어내려서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뛰어내릴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임을 언명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적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다<sup>95</sup>”라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의회조사국 연구원 닉쉬(Larry A. Niksch)는 “미행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에 행사하고 있는 정책을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고 표현해 왔다”면서, “포용정책은 타정부와의 접촉, 회합의 과정을 의미하며, 때때로 최소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확대해 주는 과정을 의미”하며, “포용의 목적은 타정부들에게 미국의 선의(good will)를 확고히 보여주

<sup>95</sup> 조지프 나이, “조지프 나이 칼럼,” 『경향신문』, 1996년 5월 10일.

고, 미국이 부정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불식시키며,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강조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sup>96</sup>

따라서 그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예상되는 변화 - 붕괴든 개혁이든 - 가 일어날 때까지 위협을 막고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포용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러한 정책이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장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한·미 유대를 강화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도 있다.”<sup>97</sup> 고 함으로써 미국의 포용정책이 정전체제 전환문제를 포함한 대북한 군사문제의 직접적인 협상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닉쉬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솔직히 털어내 놓았다.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확대는 한국의 기본적 안보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군사적 이슈를 놓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선거가 끝나면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sup>98</sup>

실제로 미국의 대 북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대미 안보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심화시켜 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의 포용정책은 미국이 남북한에 대하여 균형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반

---

<sup>96</sup> Larry A. Niksch,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제5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71-72.

<sup>97</sup> 위의 글, pp. 77-78.

<sup>98</sup> 위의 글, p. 80.

도의 안정과 균형유지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견지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고 의도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이원적 평화유지 체제」(북·미 안보대화 체제가 한 축이 되고 또 다른 한 축은 남북한 대화 체제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sup>99</sup>가 미국 내에서 설득력 있게 수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안보대화를 확대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북한과의 핵협상을 통해서나 미사일 협상, 미군유해송환협상 등에서 잘 드러났다. 특히 1996년 9월 이후 미·북간 장성급회담 개최에 대해 한국이 동의하도록 미행정부(커트 켈벨 국방차관)와 주한미군사령부(게리 릭 사령관)가 요청해왔으며, 그 내용은 북한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대미 안보적 접근을 강화해주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포용정책을 통한 대북접근은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시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내부적 분열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미 외교협회 한반도 문제 테스크 포스팀 보고서<sup>100</sup>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내부 분열상이 잘 지적되었다.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선호하며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조건 아래 그것을 추구

<sup>99</sup> 셀리그 해리슨,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sup>100</sup> 『북한의 핵도전에 대한 대처』, 미 외교협회 한반도 문제 테스크 포스팀 보고서 (통일부, 2003. 5. 동 보고서 번역자료) 참조.

한 그룹을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관리들은 재래식 무기와 보다 강력한 검증작업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관심사를 협의하는 해결책을 선호하였다. 북한개혁에 대한 대가로 경제지원 차원에서 더욱 많은 것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 다른 그룹은 제네바 합의를 하나의 재앙이라고 믿는 그룹이었다. 북한정권은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를 향한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며, 그 같은 정권과의 합의는 그 어느 것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미국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그 어떤 군사행동도 어려움을 동반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같은 방법만이 유일하게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이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고 변화를 피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자는 재래식 위협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안의 일부인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종식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지속을 선호하고 있는 협상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쇠약해진 북한정권을 붕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독립정책을 선호하는 ‘붕괴주의파’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노선은 후자, 즉 북한체제 붕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11 테러 공격 이후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보다 단호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악의 축’ 국가 대열에 올려놓았다. 부시 행정부의 「핵태세검토 보고서(U.S.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실전용’ 소형 핵무기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대상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포함시켰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강패국가(Rogue State)’의 전형적인 예로 북한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종합적인 논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01</sup> 부시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논리는 클린턴 행정부 때와는 달리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북한에게는 위협적이다. ‘악의 축’ 국가의 하나인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감행은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인식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 때의 포용정책과 부시 정부 때의 대북 강경정책(체제붕괴정책)이 상호 가미된 정책방향이 추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 북·미 관계 전망

북한의 핵 폐기 결정은 북·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25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론하면서 제네바 합의 4개항에 대하여 미국이 준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003년까지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제 1조), 지금까지 기초 구덩이를 파놓은 데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2003년에 연간 100만 킬로와트, 그 다음 해에는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또한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2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경제

<sup>101</sup> 『핵태세 검토보고서』 참조

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했으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3조) 우리를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수로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 부문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4조) 미국은 벌써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고 했다.

실제로 제네바 핵 합의서에는 북·미 관계 관련, 합의 후 3개월 내 쌍방(미·북)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 개설,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차례로 그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핵합의 이후 미국은 먼저 1995년 1월 20일 대 북한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 통신 및 정보: 미국과 북한 간에 전화통신 연결에 관련된 거래, 개인적 여행의 신용카드 사용 및 여행 관련 거래를 허용하고 언론인들의 지국 개설도 허용한다.
2. 재정거래: 미국에서 시발되거나 종결되지 않는 거래를 결재하기 위하여 미국 은행체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3. 무역거래: 미국 제철업소에서 내화물질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4. 기본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한다. 경수로 사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여, 대체 에너지 공급, 폐연료봉 해체

등 미국과 북한 간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법규에 맞추어 케이스 별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애드미럴 줘월드 자문회사와 스탠턴 그룹에게 대 북한 경제활동사업을 허가하였으며, 해외자산규제령을 개정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인적교류, 북한상품의 반입, 경수로 건설 및 에너지 제공에서의 미국기업의 참여, 북한 언론기관의 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 재무부는 미국 광물거래사인 코 메탈 사에게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허가서를 발부하였고 미연방 통신위원회도 북·미 간 직통전화 개설을 허용하였다.<sup>102</sup> 그러나 미국의 1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폭넓은 경제교류협력은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왔다.<sup>103</sup>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북·미 전문가 회담(1차 1994. 12. 6~10 워싱턴; 2차 1995. 1. 31~2.3 평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이 주 북한 구동독대사관을 연락사무소 건물로 사용기로 하였으며, 연락사무소 개설시점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 전제조건과 관계없이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이듬해 9월 미국무부 한국담당관

<sup>102</sup>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5-1996』 (서울: 통일연구원, 1995), P. 57.

<sup>103</sup> 1999년 9월 7일에서 12일간 개최된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미 행정부는 적성국교역법, 방산물자법, 수출관리법 등 3개법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1999. 9. 17)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상품의 미국내 수입과 미국상품의 북한 수출이 대부분 허용되고, 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운송이 가능해졌다.

인 골드스타인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북한측과 협의하였다. 북한은 당시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미 외교행랑과 외교관들의 판문점 통과, 미국의 대북정보수집, 미 해병대의 평양 연락사무소 주둔,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비용 등으로 지적되었다.

미·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2000년 10월 김정일이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하여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 등과 회담을 개최한 후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2000. 10. 12)하였는데 그 핵심내용 중에서 특히 첫째,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둘째,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차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는 데 합의 한 것 등이 주목된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2000. 10. 23~25)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북·미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단행될 경우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먼저 클린턴 행정부 말기 추진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정례적 형태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 역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구축하게 될 대북 신뢰를 기초로 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북 고위급 대화 채널 마련에 동의하고 나설 것이다. 미국은

이 대화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생화학 무기 비확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관련 협상을 추진코자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북한은 지난 1974년 3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 왔고, 1994년 4월부터는 이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라고 하면서 정전체제의 무실화 논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또 북한은 1996년 2월에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당분간 중단과 임시적 관리기구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핵문제 해결 이후 집중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군사문제에 대한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배타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포괄적인 안보구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회담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104</sup>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회담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자채널과 미·북 양자채널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북한과 남한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 나가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자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북·미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자채널인 4자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다. 즉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과 미국 고위관료들과 함께 내놓은 북·미 공동성명(2000. 10. 12)에서 한

<sup>104</sup>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서울: 오름, 2002), pp. 147-148.

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완화와 정전협정의 ‘평화보장체계’ 대체를 위해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이후 북·미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 다자채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간 양자 안보대화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러한 북·미 양자채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함께 논의 될 가능성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미간 대화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급선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체제 자체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지적된다. 북한은 미국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는 듯하다. 미국의 연락 사무소가 평양에 들어설 경우 체제내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신뢰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북 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지원과 관계 개선 확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관계에 있어서 핵문제 해결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 결정 이후에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결 사안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생화학

무기 개발 문제 해결 이전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도 크나큰 걸림돌이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관련 미 정부 당국 차원의 정치적 결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미 의회가 문제다. 의회가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아 북·미관계 관계 정상화에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못지않게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확장되지 않고 유일지배체제의 독재적 정권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미국의 국내여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자극하게 되어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올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관련 대북제재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반 인종차별정책 법안」과 비교된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당시 미국 행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부정적 여론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편에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비난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이익추구를 위하여 남아공과 지속적인 관계개선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남아공 정부에 대한 미국 기업들과 정부 간 관계 감소의 제안 등을 주장하며, 상하 양원에서 이와 관련된 의안을 상정하였다. 1985년 6월 5일에는 「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동 법안은 신규투자과 핵관련

협력 중지, 은행용자금지 및 컴퓨터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1986년 10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더욱 포괄적인 「반 인종차별정책 법안」(Comprehensive Anti-Apartheid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실시되었다.<sup>105</sup> 결국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 남아공 관계는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은 「반 인종차별정책 법안」과 같이 대북제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대북제재 관련 법안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향후 미국과 북한관계 개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클 것이다.

---

<sup>105</sup> *Time*, July, 1991. p. 19.



## 결론

# V

현재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이제까지 제기되어 왔던 핵무장 능력을 구비한 국가에서 몇 개의 핵폭탄을 가진 핵무장 국가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조차도 이제는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핵 국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난 11일 “북한이 1990년대 초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sup>106</sup>라고 한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분위기로 말미암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재 가능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 왔던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장 관련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관련 협상이나 대화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가 일반화 될 경우 중국 및 러시

<sup>106</sup> 『조선일보』, 2004년 11월 11일.

아 역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추구하는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점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북한은 그들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 협상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는 ‘핵동결 대 상응조치’ 제안으로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사실이 분명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마찬가지로 일부 핵시설의 동결 약속은 단지 필요조건의 하나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결국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분명한 핵 폐기 의사표명과 함께 단기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들의 핵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그들의 완전한 핵 포기를 의미하는 미국의 핵 폐기 요구에 선뜻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결국 북한의 체제변화가 앞당겨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남아공 백인정권이 인종차별정책을 포기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핵 폐기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결정 이후의 북·미관계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 해결,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등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공과 같은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폐기 선언과 함께 이를 실행에 옮기는 포괄적인 결정이 내려져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미관계는

전자의 시나리오와 같은 폭넓은 북·미관계 개선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들 체제자체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 즉 인권문제, 핵을 제외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접근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 행정부는 인종차별정책으로 국제적 제재상태에 놓여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하여 시도해왔던 ‘건설적 개입 (Constructive Engagement)’정책을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은 한편에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비난을 가하여 국제적 여론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이익추구를 위하여 남아공과 지속적인 관계개선 정책을 펴나간 것과 같이 북한의 인권문제 등 체제문제에 대하여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평화적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군사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남만권.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현황 및 사례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1.
- 라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 인하대학교, 1999.
-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서울: 오름, 2002.
-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핵확산과 핵확산 금지정책』.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3.
- 이춘근. 『북한 핵의 문제 : 발단, 협상과정,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1995. 부록 # 23(1994년 10월 21일, 북한-미국 기본합의문. 한글 텍스트).
-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의 핵정책』. 서울: 법문사, 1981.
- 전성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실태』. 통일정세분석 2004-12.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나남, 1991.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1995-1996』. 서울: 통일연구원, 1995.
- Bhutto, Z. A. *If I Am Assassinated*. New Delhi, Vikas, 1979.
- Dunn, Lewis A. *Controlling the Bomb: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1980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2.
- Ganguly, Sumit. *The Origins of War in South Asia: Indo-Pakistan Conflicts since 1947*.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6.
- Kim, Tae-woo. *Nuclear Proliferation: Long-term Prospect and Prospect on the Basis of a Realist Explanation of Indian Case*.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New York at Buffalo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1989.
- Neuman, Stephanie G.(ed).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4.

- Paul, T.V. *Reaching for the Bomb: The Indo-Pak nuclear Scenario*. New Delhi: Dialogue Publications, 1984.
- Quester, George. *The Politics of Nuclear Prolifer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Snyder, Jed C. and Samuel F. Wells, Jr.(eds). *Limiting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5.
- Spector, Leonard S.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0.
- U.S. Department of Defense.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2001.
- Walters, Ronald W. *South Africa and the Bomb : Responsibility and Deterrenc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7.
- Weissman, Steve and Herbert Krosney. *The Islamic Bomb*. New York: Times Books, 1981.
- Woong Chun.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for Selected Countrie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1991.

## 2. 논문

-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북한연구』 제3권 22호 (1992 여름).
- 래리 A. 닉쉬.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제5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인터넷 자료.
- Hibbs, Mark. “South Africa’s Secrete Nuclear Program: From a PNE to a Deterrent.” *Nuclear Fuel*. May 10, 1993.
- Hoodbhoy, Pervez. “Pakistan and the Deep Cuts Regime.” in Harold A.

-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 Howlett, Darryl and John Simpson. "Nuclearization and Denuclearization in South Africa." *Survival The IISS Quarterly*, Autumn 1993.
- Jones, Gregory. "From Testing to Deploying Nuclear Forces: The Hard Choices Facing India and Pakistan." *RAND Issue Paper*. July, 2000.
- Knapik, Michael. "South African AEC Head Says Stockpile of HEU Will Be Maintained for Safari." *Nuclear Fuel*. August 16, 1993.
- Lepingwell, John W. R. "Ukrainian Parliament Removes START I Conditions."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esearch Report*. February 25, 1994.
- Melman, Yossi. "South Africa Admits: Israel Helped Us Develop Nuclear Weapon." *Ha'aretz*. April 20.
- Pabian, Frank V. "The South African Nuclear Weapons Program: Lessons for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Non-Proliferation Review*.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fall 1995.
- Shirin Tahir Kheli. "Pakistan." in James Everett Katz and Onkar S. Marwah (eds). *Nuclear Power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2.
- Wolfsthal, John. "U.S. Needs a Contingency Plan for Pakistan's Nuclear Arsenal." *Los Angeles Times*. October 16, 200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익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용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근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